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해설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해설서

2025. 1.

I

개요 _ 1

| | |
|----------------|---|
| 1. 개요 | 2 |
| 2. 관련 법령 | 3 |

II

고시 전문 _ 5

|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6 |
| [별표 1] 규칙 제10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 8 |
|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 9 |
| [별표 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 11 |
| [별표 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 12 |
| [별표 5]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사후관리 절차 | 13 |
| [별지 제1호서식] 컨설팅 수행 실적 명세서 | 14 |
|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 15 |
| [별지 제3호서식] 임원 명단 | 16 |
| [별지 제4호서식] 설비보유현황 | 17 |
| [별지 제5호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최초지정) | 18 |
| [별지 제5-1호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사후관리) | 19 |
| [별지 제6호서식]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20 |
| [별지 제7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 21 |
| [별지 제8호서식] 기술인력 교육관리 카드 | 22 |
| [붙임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 23 |

III

조문별 기준 해설 _ 25

| | |
|-------------------------------------|----|
| 1. 목적 | 26 |
| 2. 정의 | 27 |
| 3. 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 | 29 |
| 4. 제출서식 등 | 31 |
| 5.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 39 |
| 6. 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기능 | 41 |
| 7.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범위 | 42 |
| 8.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 43 |
| 9. 업무 수행능력 심사 기준 점수 | 44 |
| 10.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 45 |
| 11. 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 49 |
| 12. 보안대책 | 54 |

| | |
|-----------------|----|
| 13. 사후관리 | 55 |
| 14. 재검토기한 | 56 |

IV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 제출서류 안내 _ 57

| | |
|-----------------------------------|----|
| 1. 개요 | 58 |
| 2. 심사 제출 방법 및 서류 | 59 |
| 3. 유형별 제출서류 | 63 |
| 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자체점검표 | 68 |
| 5. 별지 서식별 작성 방법 | 74 |

V

기업의 주요 변경사항에 따른 신고 절차 _ 85

| | |
|------------------------------------|----|
| 1. 개요 | 86 |
| 2.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 87 |
| 3. 신규 기술인력 등재 | 88 |
| 4. 기술인력 말소 | 92 |
| 5. 기술인력 등급변경 | 94 |
| 6. 납입 자본금 변경 | 96 |
| 7.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변경 | 97 |

VI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합병 신고 절차 _ 99

| | |
|---------------------------------|-----|
| 1. 개요 | 100 |
|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양도·합병 신고 | 101 |

VII

자주 하는 질문 _ 105

| | |
|------------------|-----|
| 1. 실적 관련 | 106 |
| 2. 교육 관련 | 109 |
| 3. 기술인력 관련 | 110 |
| 4. 기타 | 111 |

VIII

부록 _ 113

| | |
|----------------|-----|
| 1. 관련 법령 | 114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해설서**

개요

1. 개요
2. 관련 법령



I

개요



1. 개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5조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 컨설팅 분야에서 전문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민간기업을 지정하여 양질의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 제4항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본 해설서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신규 지정 및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의 관련 법령, 고시 해설, 지정신청 준비사항, 지정심사, 사후 관리 등의 세부내용을 제시한다.

2. 관련 법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제41조(과태료)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제9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합병)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
제4조(제출서식 등)
제5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제6조(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7조(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범위)
제8조(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제9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기준 점수)
제10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제11조(건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제12조(보안대책)
제13조(사후관리)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제2017 - 00099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9조(벌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3호

●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의 범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해설서**

고시 전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규칙 제10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별표 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별표 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별표 5]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사후관리 절차

[별지 제1호서식] 컨설팅 수행 실적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3호서식] 임원 명단

[별지 제4호서식] 설비보유현황

[별지 제5호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최초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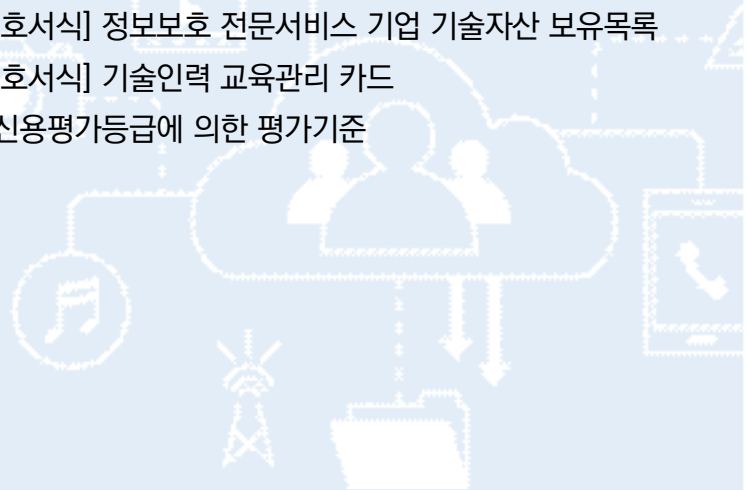
[별지 제5-1호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사후관리)

[별지 제6호서식] 경력 및 실적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별지 제8호서식] 기술인력 교육관리 카드

[붙임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II

고시 전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 10.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24호, 2017. 10. 27.,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 컨설팅"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제1호에 대한 수행실적을 말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제, 장비 납품 등 부가적인 실적은 실적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3. "최근"이라 함은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3조(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4조(제출서식 등) ① 규칙 제1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② 규칙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③ 규칙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④ 규칙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3조에 따른 심사서류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및 사후관리 심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별표4 또는 별표5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2. 그 밖에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는 업무(규칙 별표1의 기술인력의 자격확인 및 별표1의 컨설팅 수행 실적의 사실 확인을 포함한다)
-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지정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3.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범위) 규칙 제8조 제1호 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관련 학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술심의회에서 이를 판단한다.

제8조(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의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3.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5. 정보시스템감리사
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제9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기준 점수) 규칙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이라 함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규칙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①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2. 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 ②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배분한다.

제12조(보안대책) 규칙 제8조 제5호 라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이라 함은 별표 3와 같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23조 및 규칙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준수 여부를 사후관리 심사한다. 다만, 규칙 제8조제4호는 별표 2의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중 사후관리 심사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 ②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 제8조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제14조(재검토키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규칙 제10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제3조 관련)

| 구 분 | | 제 출 서 류 |
|---------------------------------|---|---|
| 인력 기준에 필요한 제출서류 | 1. 관련 자격, 관련 학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가.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나. 기술자격증 또는 정보보호 국내외 자격 사본 다.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라. 재직증명서 마. 필요시 경력 및 실적 확인기관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
|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2. 업무수행능력심사평가표 각호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술인력 보유현황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원 명단 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설비보유현황 마.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5-1호서식에 의한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 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술인력 교육관리 카드 자. 기술심의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자료 |

[비고]

- 위 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당해 기술인력에 해당되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한다.
 - 가. 규칙 별표 1의 관련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위 표 제1호의 서류
- 위 표 제1호마목의 "경력 및 실적 확인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정보보호에 전문연구능력이 있는 다음의 연구기관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포함한다)
 -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분야의 전문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비영리 연구기관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 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회원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업체
 -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 (2)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컨설팅수행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3) 법인세납부실적이 있는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통합사업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바. 그 밖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업체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 (3) 은행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4) 대형컴퓨터시스템, 산업용 전자제어시스템(DCS·SCADA), 초고속정보통신기기를 대규모로 사용하거나 이의 설계·생산·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업체
 - (5) 컴퓨터시스템 또는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공급을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업체
 - 사. 가목 부터 바목에 준하는 기관 또는 업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급 기술인력의 경력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
- 위 표 제1호다목 및 제2호가목과 관련하여 기술인력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해줄 업체가 폐업·도산·합병 등으로 그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에 갈음하여 당해 기술인력의 재직여부와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제10조 관련)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 지표 | 지정심사 | | 사후관리 심사 | |
|----------------|--|----------|------|---|---------|---|
| | |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 1. 경험 (35) |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총액 | 계약 금액 총액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원 이상: 배점의 100% • 10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계약금액총액} / 10\text{억원}) \times 100$ | 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억원 이상: 배점의 100% • 3.3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계약금액 총액} / 3.3\text{억원}) \times 100$ ※ 최근 1년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 기준 |
| | 최근 3년간 신청업체에서 컨설팅 수행 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의 비율 | 비율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 모두 실적이 있는 경우: 배점의 100% • 기술인력 모두 실적이 있지 않은 경우: 배점의 x% ※ $x = (\text{실적이 있는 기술인력의 수} / \text{총 기술인력 수}) \times 100$ | - | 제외 |
| 2. 전문화 정도 (35) | 중급 이상의 기술인력 비율 | 비율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상: 배점의 100% • 50% 이상: 배점의 80% • 40% 이상: 배점의 50% • 30% 이상: 배점의 30% • 20% 이상: 배점의 10% ※ $x = (\text{중급 이상 기술인력의 수} / \text{총 기술인력의 수}) \times 100$ | 20 | 지정 심사와 동일 |
| | 기술인력의 재직비율 | 비율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상: 배점의 100% • 50% 이상: 배점의 80% • 40% 이상: 배점의 50% • 30% 이상: 배점의 30% • 20% 이상: 배점의 10% ※ $x = (\text{최근 3년 이상 재직자 수} / \text{총 기술인력 수}) \times 100$ | - | 제외 |
| | 총매출액대비 정보보호분야 매출액의 비율 | 비율 | 10 | • 배점×총 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 - | 제외 |
| | 교육지원체계 적합성 | 비율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배점의 100% • 최근 2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배점의 x% ※ $x = (40\text{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수} / \text{총 기술인력의 수}) \times 100$ ※ 정보보호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교육 중심(일반 교양교육 제외) |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배점의 100% • 최근 1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배점의 x% ※ $x = (20\text{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수} / \text{총 기술인력의 수}) \times 100$ ※ 정보보호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교육 중심(일반 교양교육 제외)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 지표 | 지정심사 | | 사후관리 심사 | | | | | | | | | | |
|-----------------|---|----------------|------|---|---------|---|--------|---------|---|--------|----|--------|---|--------|---|
| | |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 | | | | | | | |
| 3. 신뢰도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가 등급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A ~ A- : 배점의 100% • BBB+ ~ BBB- : 배점의 80% • BB+ ~ BB- : 배점의 60% • B+ ~ B- : 배점의 40% • CCC+ 이하 : 배점의 20% | 5 | 지정 심사와 동일 | | | | | | | | | |
| | 정보보호 인증기업 | 인증 여부 평가 등급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업: ISMS 또는 ISO27001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평가등급</th> <th>배점</th> </tr> <tr> <td>AAA~AA</td> <td>배점의100%</td> </tr> <tr> <td>A</td> <td>배점의80%</td> </tr> <tr> <td>BB</td> <td>배점의60%</td> </tr> <tr> <td>B</td> <td>배점의40%</td> </tr> </table> | 평가등급 | 배점 | AAA~AA | 배점의100% | A | 배점의80% | BB | 배점의60% | B | 배점의40% | 5 |
| 평가등급 | 배점 | | | | | | | | | | | | | | |
| AAA~AA | 배점의100% | | | | | | | | | | | | | | |
| A | 배점의80% | | | | | | | | | | | | | | |
| BB | 배점의60% | | | | | | | | | | | | | | |
| B | 배점의40% | | | | | | | | | | | | | | |
| 4. 기술 개발 실적 (5) | 최근 3년간 정보보호 분야 정부과제 수행실적 | 정부 지원 금액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 이상: 배점의 100% • 3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정부지원금총액}/3\text{억원}) \times 100$ | 5 | 지정 심사와 동일 | | | | | | | | | |
| 5. 종합 심사 (15) | 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 | 비 계량 |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론의 체계성·일관성 • 방법론의 타당성·적합성 • 방법론의 독창성 • 위험분석의 타당성 • 적용사례를 통해서 본 방법론의 우수성 ※ 보유 활용중인 기술적/관리적 기술도구 포함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론의 체계성·일관성 • 방법론의 타당성·적합성 • 방법론의 독창성 • 위험분석의 타당성 • 적용사례를 통해서 본 방법론의 우수성 ※ 보유 활용중인 기술적/관리적 기술도구 포함 | | | | | | | | | |
| | | | | | 5 | • 지정심사 또는 직전년도 사후관리 심사 이후 방법론 개선도 | | | | | | | | | |
| 6. 기타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 확인 여부 | 가점 |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 이노비즈기업 확인 기업: 가점 5점 | 가점 | 지정 심사와 동일 | | | | | | | | | |
| |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제한을 받은 기간 | 입찰 참가 제한 월수 | 감점 |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 감점 | 지정 심사와 동일 | | | | | | | | | |

[비고]

1. 위 표 각 세부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세부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기준은 붙임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제12조관련)

| 주요 내용 | 비고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약점분석업무(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업무수행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이중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기술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취약점분석자료(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트북컴퓨터 기타 휴대용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통제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p>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관련</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술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의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와 신원조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기술인력이 관계법령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제반의무를 숙지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기술인력을 채용할 때의 적격 심사와 퇴직할 때의 퇴직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체 내부 및 외부의 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p>인력에 대한 보안대책관련</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취약점분석자료 및 컨설팅 기술자료(도구포함)를 보안등급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9. 기술인력이 아닌 자는 취약점분석자료에 접근·열람·수집·편집·반출·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전송·보존하는 취약점분석자료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서면, 도면, 마이크로필름·전산출력물 등 출력물 형태의 취약점분석자료에 대한 보관·복사·배포·폐기 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p>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관련</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정보보호에 관한 업체의 기본방침을 대표자가 서면으로 공표하고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3. 취약점분석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의 관리·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14. 사업자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정보보호 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및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관리규정에 따른 제반의무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p>기타</p> |

[별표 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별표5]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사후관리 절차



[별지 제4호서식]

| 설비 보유 현황 | | | | | |
|---------------------|----|-------|-------|-------|----|
| 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 | | | | | |
| 소재지 | | | | | |
| 구분 | 명칭 | 제조 회사 | 도입연월일 | 주요 기능 | 비고 |
| | | | 도입 가액 | | |
|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설비 | | | | | |
| | | | | | |
| | | | | | |
| 나. 업무수행 및 지원설비 | | | | | |
| | | | | | |
| | | | | | |
| 다.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 | | | | |
| | | | | | |
| | | | | | |

|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최초지정) | |
|---|----|
| I.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 |
| (1)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총매출액: | 천원 |
| (2)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정보보호 분야의 매출액: | 천원 |
| (3)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 % |
| II. 기술인력의 수 | |
| (1) 최근 3년간 신청업체에서 컨설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 | 명 |
| (2) 중급 이상의 기술인력: | 명 |
| (3) 최근 3년 이상 재직 중인 기술인력: | 명 |
| (4) 연 평균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 명 |
| III. 기타 | |
| (1)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여부 (○ , ×) | |
| (2) 조달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경험 여부 (○ , ×) | |
| [비고] 1. I 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신청업체 회계담당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계산내역을 첨부한다. 2. 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사후관리) | |
|---|--|
| <p>I.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p> <p>(1) 사후관리 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총매출액: 천원</p> <p>(2) 사후관리 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정보보호 분야의 매출액: 천원</p> <p>(3)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p> | |
| <p>II. 기술인력의 수</p> <p>(1) 중급 이상의 기술인력: 명</p> <p>(2) 연 평균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명</p> | |
| <p>III. 기 타</p> <p>(1) 조달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경험 여부 (○, ×)</p> | |
| <p>[비고]</p> <p>1. I 항목은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신청업체 회계담당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계산내역을 첨부한다.</p> <p>2. 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한 금액으로 한다).</p> | |

[붙임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 | | | 5점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0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0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0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해설서**

조문별 기준 해설

1. 목적
2. 정의
3. 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
4. 제출서식 등
5.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6. 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7.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범위
8.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9. 업무 수행능력 심사 기준 점수
10.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11. 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12. 보안대책
13. 사후관리
14. 재검토기한



III

조문별 기준 해설



1. 목적

관련 조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부터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¹⁾으로서, 본 고시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3. 그 밖에 정보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법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집단이나 단체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상업상 영리법인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음

2. 정의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 컨설팅"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제1호에 대한 수행실적을 말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제, 장비 납품 등 부가적인 실적은 실적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3. "최근"이라 함은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해설

1. "정보보호 컨설팅"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정보보호 컨설팅은 과거에는 컨설팅 대상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한정하였다가 오늘날에는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영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일부분만 진행한 경우 불인정)을 의미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조의 보호지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7조의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을 참고하여 이에 준하여 관리되는 시설 및 장소 포함

2.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제1호에 대한 수행실적을 말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제, 장비 납품 등 부가적인 실적은 실적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 컨설팅 수행실적은 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에 대한 수행실적을 의미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수행실적"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행실적을 의미한다.

- 단,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보안관제, 장비 납품 등 부가적인 실적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고시 제2조에 따른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업 내용 및 실적금액이 명확하게 구분 산정되어야 한다.

3. "최근"이라 함은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 최근의 기준은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한다.
 - 본 고시에서 적용하는 "최근"의 기준을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예 시 >

▶ 지정 신청일이 2024년 5월 31일인 경우, 최근 3년 : 2021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분기는 2024년 1분기이므로, 직전 분기 말 최근 3년은 2021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기간에 해당함

※ 최근 1년 또는 최근 2년 기준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3. 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

관련 조문

제3조(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해설

- 규칙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인력기준 및 업무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고시 [별표 1]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고시 [별표 1]의 “인력기준에 필요한 제출 서류”란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관련 자격 및 관련 학력 확인을 위해 ①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②기술자격증 또는 정보보호 국내외 자격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일체 제출한다.
 - 경력 및 등급 산정을 위해 ①재직증명서, ②경력증명서(근무기간 또는 담당업무 명시 포함),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등을 제출한다.
 - ※ 필요시 경력 및 실적 확인기관이 날인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제출
 - ※ 과거 경력확인을 위한 서류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에서 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이 불가
- 고시 [별표 1]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란 규칙 제8조 및 고시 제10조에 따라 고시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각 호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관련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7.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1]

규칙 제10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제3조 관련)

| 구분 | | 제출서류 |
|---------------------------------|---|---|
| 인력 기준에 필요한 제출서류 | 1. 관련 자격, 관련 학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가.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나. 기술자격증 또는 정보보호 국내외 자격 사본 다.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라. 재직증명서 마. 필요시 경력 및 실적 확인기관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
| 업무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2. 업무수행능력심사평가표 각호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술인력 보유현황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원 명단 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설비보유현황 마.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5-1호서식에 의한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 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 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술인력 교육관리 카드 자. 기술심의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자료 |

[비고]

- 위 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당해 기술인력에 해당되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한다.
 - 규칙 별표 1의 관련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위 표 제1호의 서류
- 위 표 제1호마목의 "경력 및 실적 확인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보보호에 전문연구능력이 있는 다음의 연구기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포함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분야의 전문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비영리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회원사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업체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컨설팅수행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법인세납부실적이 있는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통합사업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그 밖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 은행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대형컴퓨터시스템, 산업용 전자제어시스템(DCS·SCADA), 초고속정보통신기기를 대규모로 사용하거나 이의 설계·생산·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업체
 - 컴퓨터시스템 또는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공급을 주된 사업 분야로 하는 업체
 - 가목 부터 바목에 준하는 기관 또는 업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급 기술인력의 경력 또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
- 위 표 제1호다목 및 제2호가목과 관련하여 기술인력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해줄 업체가 폐업·도산·합병 등으로 그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에 갈음하여 당해 기술인력의 재직여부와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 제출서식 등

관련 조문

제4조(제출서식 등)

- ① 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② 규칙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③ 규칙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④ 규칙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에 따른 심사서류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해설

-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서 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제출서식을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7.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① 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기술인력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인력구분 등 세부정보를 최초 지정 신청일부터 기술인력 신고 순으로 연속하여 기록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는 기술인력으로 등재 된 인력에 한하여 투입 가능하며,
 - 규칙 [별표 1] 비고 7호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별지 서식에 대한 작성 방법은 「Ⅲ.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 제출자료 안내 - 5. 별지 서식별 작성 방법」 참조

② 규칙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신청업체의 재무제표상 자본 총계가 10억원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정신청 직전에 기 발행된 분기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5.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③ 규칙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신청업체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규칙 제8조 제3호에 따른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설비보유현황을 누락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업체의 설비 보유현황에는 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 소재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설비, 업무수행 및 지원설비,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설비 정보를 기재한다.

※ 별지 서식에 대한 작성 방법은 「Ⅲ.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 제출자료 안내 - 5. 별지 서식별 작성 방법」 참조

관련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3. 그 밖에 정보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관련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나.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다. 업무 관련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④ 규칙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3조에 따른 심사서류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규칙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고시 제3조에 따라 신청업체의 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규칙 [별표 1] 및 고시 [별표 1]의 각 호를 따른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1호 관련)

| 구분 | 기열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 나열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
| 초급 1행 | 1. 학사 이상의 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는 사람 |
| 중급 2행 | 1. 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 초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 |
| 고급 3행 |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 중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 |
| 특급 4행 | 1.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 고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 |

[비고]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사람
-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이란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격증 수와 관계없이 1년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된다.
- 정보통신 관련 경력 2년은 정보보호 관련 경력 1년으로 인정된다.
-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를 준용한다.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경력 인정 여부는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기술인력 경력 산정 예시

(1) (세로열) 기술인력 등급 산정을 위한 자격기준(관련 자격 또는 학력 보유 여부)

- “관련 자격 또는 학력” 보유 여부에 따른 등급 기준을 정함
 - ※ **가열**(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정보통신 유관 학력으로 등급 산정
 - ※ **나열**(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정보통신 무관 학력으로 등급 산정

(2) (가로행) 기술인력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부여 기준

- 최초 신고 된 “관련 자격 또는 학력 보유 여부(**가열**, **나열**)”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 ※ **가열**(관련 자격 또는 학력을 보유한 사람)에서 학사는 초급(**1행**), 석사는 중급(**2행**) 등으로 부여

(3) 관련 학력 및 자격 보유여부 확인 기준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 확인은 원칙적으로 고시 [별표 1]에 따른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며, 최초 신고 내용을 기점으로 기술인력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산정함
- 정보통신 관련 경력은 정보보호 관련 경력 대비 50%에 한하여 인정함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 취득 이전의 경력은 50%에 한하여 인정함
 - ※ 관련 자격 및 학력 취득 시점을 고려하여 신청업체에서 자체점검 후 해당 자료를 제출함

〈 관련 자격 및 학력 보유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고시 [별표 1] 참고) 〉

| 제출 서류 | 비고 |
|----------------------------------|--|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현재 직장 및 과거 직장의 자격득실 이력이 확인되어야 경력을 인정함 |
| 2.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후관리 시 이미 등재된 인력은 제출 생략 가능 |
| 3. 기술자격증 또는 정보보호 국내외 자격 사본 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 4. 과거 직장의 경력증명서(날인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경력인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경력 산정 가능 • 과거 직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을 증빙서류로서 인정함(별지 제6호서식 활용 가능) |
| 5.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날인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야 함 |

※ [유의] 과거 직장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경력 인정 여부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함
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통해 가입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고, 경력 산정 시 정보통신 관련 경력으로 인정함

예시 1

영문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D컨설팅회사 입사한 최씨

- ① 관련 학력 또는 자격 보유 여부 : 보유(기사 자격)
- ② 유관 경력 : 정보보호, 0년
- ③ 등급 구분 : 초급
 - ▶ 관련 학력 보유자는 아니지만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을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므로 초급에 해당함

예시 2

영문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A사에서 3년 이상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박씨

- ① 관련 학력 또는 자격 보유 여부 : 미보유(영문학과 학사)
- ② 유관 경력 : 정보통신, 3년
- ③ 등급 구분 : 초급
 -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으므로 초급에 해당함

예시 3

컴퓨터공학 전문학사 졸업 후 A사에서 3년간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박씨

- ① 관련 학력 또는 자격 보유 여부 : 보유(컴퓨터공학 전문학사)
- ② 유관 경력 : 정보통신, 3년
- ③ 등급 구분 : 초급
 - ▶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으므로 초급에 해당함

예시 4

유아교육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3년간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A기업 윤씨

- ① 관련 학력 또는 자격 보유 여부 : 미보유(유아교육학과 전문학사)
- ② 유관 경력 : 정보통신, 3년
- ③ 등급 구분 : 없음(기술인력 자격기준 불충족)
 - ▶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이 아니므로 초급 등급기준(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함

예시 5

4년제 대학 정보보호학과 졸업 후 3년간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A기업 김대리

- ① 관련 학력 또는 자격 보유 여부 : 보유(정보보호 학사)
- ② 유관 경력 : 정보보호, 3년
- ③ 등급 구분 : 중급
 - ▶ 관련 학사 학위 취득 후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3년 인정되므로 중급에 해당

예시 6

K전문대학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컨설팅 경력 7년 5개월인 C기업 박과장

- ① 관련 학력 또는 자격 보유 여부 : 보유(컴퓨터 전문학사)
- ② 유관 경력 : 정보보호, 5년 5개월
- ③ 등급 구분 : 중급
 - ▶ 관련 전문대학 졸업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인정되므로 중급에 해당함

예시 7

경영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K컨설팅회사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황씨

- ① 관련 학력 또는 자격 보유 여부 : 미보유(경영학과 학사)
- ② 유관 경력 : 정보보호, 5년
- ③ 등급 구분 : 중급
 - ▶ 관련 학력 또는 관련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인정되므로 중급에 해당함

예시 8

2000년 2월 20일 정보보호 학사 취득, 2005년 2월 20일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한 이씨는 D사에서 2000년 3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 ① 관련 학력 또는 자격 보유 여부 : 보유(정보보호 석사)
- ② 유관 경력 : 정보보호, 3년 4개월
- ③ 등급 구분 : 중급

| | | |
|-----------|---------------------------------------|--------------------------------------|
| ▶ 관련학력/자격 | 보유(학사 2000. 2. 20. / 석사 2005. 2. 20.) | |
| 회 사 명 | D사 | |
| 분 야 | 정보보호유관 | |
| 수행업무 | 정보보호 컨설팅 | |
| 근무기간 | 2005-02-20 ~ 2006-01-31 (11개월) | 2000-03-01 ~ 2005-02-19 (4년 11개월) |
| 경력인정 | 11개월 | 2년 5개월 |
| | 최종 학위 취득 후 정보보호 유관경력 100% 인정 | 최종 학위 취득 이전 정보보호 유관 경력 50% 인정 |

예시 9

김씨는 2001년 1월 1일부터 A사 전산실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2005년 2월 1일 컴퓨터관련 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3월 1일 정보보안업체 B사로 이직하여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년 5월 1일 정보통신시설 서버 관리 업체인 C사로 이직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

- ① 관련 학력 또는 자격 보유 여부 : 보유(컴퓨터 학사)
- ② 유관 경력 : 정보보호, 7년 2개월
- ③ 등급 구분 : 고급

| ▶ 관련학력/자격 | 보유(2025. 2. 1.) | | | |
|-----------|--|--|--|---|
| | 회사명 | C사 | B사 | A사 |
| 분야 | 정보통신유관 | 정보보호유관 | 정보통신유관 | |
| 수행업무 | 서버 관리 | 정보보호 컨설팅 | 전산실 유지보수 업무 | |
| 근무기간 | 2010-05-01 ~ 2012-12-31 (2년 8개월) | 2006-03-01 ~ 2010-04-30 (4년 2개월) | 2005-02-01 ~ 2006-02-28 (1년 0개월) | 2001-01-01 ~ 2005-01-31 (4년 1개월) |
| 경력인정 | 1년 4개월 | 4년 2개월 | 6개월 | 1년 |
| |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므로 50% 인정 |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므로 100% 인정 |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므로 50% 인정 | 최종 학위 취득 이전 경력 및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므로 25% 인정 |

예시 10

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정보보호 경력이 4년 3개월인 B연구소 이책임

- ① 관련 학력 또는 자격 보유 여부 : 보유(정보보호 박사)
- ② 유관 경력 : 정보보호, 4년 3개월
- ③ 등급 구분 : 특급
- ▶ 박사 학위 보유자이고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인정되므로 특급에 해당함

5.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관련 조문

제5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는 별표 4와 같다.

해설

- 고시 [별표 4]를 통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지정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누리집에서 확인
(평균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개월 소요)
 - 지정신청 접수 : 규칙 제10조에 따른 서류와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등 지정 신청 제출 서류 일체를 전자우편 (k-consulting@kisa.or.kr)을 통해 접수
 - 제출서류 검토 : 신청업체의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제출서류 일부 미비 시 보완 요구 가능
 - 기술심의위원회 :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학계 및 관계 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 된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류 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수행
 - 서류심사 : 신청업체의 인력 및 자본 기준 충족여부, 업무수행능력(계량평가), 정보보호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 평가
 - 현장실사 : 신청업체의 서류 심사 내용 확인, 설비 요건, 정보보호 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 현장 확인
 - 종합심사 : 신청업체의 발표를 통해 업무수행능력(비계량평가)을 평가하며,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현장 실사와 함께 진행 가능
 - 심사결과 : 서류심사·현장실사·종합심사 결과를 검증하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예정업체 선정
 - 신원조사 : 규칙 [별표1] 비고7에 따라 기술인력이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신청 업체의 인력요건 미충족 시 지정 유보 가능
 - 지정 확정 : 지정업체를 확정하고 지정서 수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절차



6. 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관련 조문

제6조(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및 사후 관리 심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별표4 또는 별표5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2. 그 밖에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는 업무(규칙 별표1의 기술인력의 자격확인 및 별표1의 컨설팅 수행실적의 사실 확인을 포함한다)
- 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지정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3.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심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별표 4(또는 별표 5)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 업무
 - 그 밖에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는 업무(기술인력의 자격확인 및 컨설팅 수행실적의 사실 확인을 포함)
-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7.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범위

관련 조문

제7조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범위) 규칙 제8조 제1호 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관련 학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술심의회에서 이를 판단한다.

해설

- 규칙 제8조 제1호에 따른 고시 [별표 1]의 비고 제1호 “정보통신 관련학과”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 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을 참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만약, 정보통신 관련 학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는 기술심의회에서 판단한다.

참고

관련 학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1.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의 범위

- 가. 전자관련 학과(전공)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
- 나. 통신관련 학과(전공)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 다.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8.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관련 조문

제8조(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의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3.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5. 정보시스템감리사
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해설

-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외 기술자격으로서 본 조항의 제1호에서 부터 제7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기술인력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는 자격증 사본 또는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하다.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예) |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예) |
|--|------------------------------------|
| 2. 정보보호전문가(SIS) 3.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 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1.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5. 정보시스템감리사 |

※ 제2호의 정보보호 전문가(SIS)는 2012년 제도가 폐지되어, 기존 자격 취득자는 자격기간 연장 등을 통해 유효기간 내 서류를 증빙하여야 인정 가능

※ 제3호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과 제4호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은 2018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로 통합됨

-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규칙 [별표 1]의 비고 제5호에 따라 자격증 수와 관계없이 1년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된다.
- 다만,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증을 보유함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인정 된 경우 규칙 [별표 1]의 비고 제5호를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9. 업무 수행능력 심사 기준 점수

관련 조문

제9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기준 점수) 규칙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이라 함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를 말한다.

해설

- 규칙 제8조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려면 고시 [별표 2] 업무 수행능력심사 평가표에서 기준 점수인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 결과 70점 이상 획득하지 못할 경우 규칙 제8조 제4호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이 불가하다.

참고

규칙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 나.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 다. 업무 관련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이상을 받을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 가. 업무 수행 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 나.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

10.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관련 조문

제10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규칙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해설

- 본 조항은 규칙 제8조 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은 고시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각 세부평가항목별 “최근”은 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라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한다.
- 평가 항목은 경험, 전문화 정도, 신뢰도, 기술개발실적, 종합심사, 기타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항목은 최초 지정심사와 사후관리 심사 별로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이 다르므로, 신청 업체는 평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히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제10조 관련)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지정심사 | | 사후관리 심사 | | 해설 |
|----------------|--|----------|------|---|---------|---|---|
| | |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
| 1. 경험 (35) |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 계약 금액 총액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억원 이상: 배점의 100% 10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계약금액총액} / 10\text{억원}) \times 100$ | 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억원 이상: 배점의 100% 3.3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계약금액총액} / 3.3\text{억원}) \times 100$ ※ 최근 1년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실적은 본 고시 제11조 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최초 지정심사는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 실적을 평가하며, 사후관리 심사는 최근 1년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을 심사함 증빙서류: 별지 제1호서식, 계약서, 세금계산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발주사 실적증명서(날인본) 등 |
| | 최근 3년간 신청업체에서 컨설팅 수행 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의 비율 | 비율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인력 모두 실적이 있는 경우: 배점의 100% 기술인력 모두 실적이 있지 않은 경우: 배점의 x% ※ $x = (\text{실적이 있는 기술인력의 수} / \text{총 기술인력 수}) \times 100$ | - |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업체에서 최근 3년간 고시 제 11조에 따른 컨설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자격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의 비율을 평가한다. 증빙서류: 발주사에서 날인 발급한 프로젝트 참여인력확인원(별지 제6호 서식 활용 가능),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프로젝트 투입인력이 명시되어 있는 업무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적증명서(날인본) 등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 2. 전문화 정도 (35) | 중급 이상의 기술인력 비율 | 비율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상: 배점의 100% 50% 이상: 배점의 80% 40% 이상: 배점의 50% 30% 이상: 배점의 30% 20% 이상: 배점의 10% ※ $x = (\text{중급 이상 기술인력의 수} / \text{총 기술인력의 수}) \times 100$ | 20 | 지정 심사와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술인력에 한하여 중급 이상의 비율을 평가한다.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5호 서식, 기술인력별 경력 및 등급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등 |
| | 기술인력의 재직비율 | 비율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상: 배점의 100% 50% 이상: 배점의 80% 40% 이상: 배점의 50% 30% 이상: 배점의 30% 20% 이상: 배점의 10% ※ $x = (\text{최근 3년 이상 재직자 수} / \text{총 기술인력 수}) \times 100$ | - |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술인력에 한하여 최근 3년 이상 근속 재직한 기술인력의 비율을 평가한다.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5호 서식, 기술인력별 증빙자료 등 |
| | 총매출액대비 정보보호분야 매출액의 비율 | 비율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점 × 총 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 - |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분야란, 정보보호산업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암호·인증·인식·감시 등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보안 기술을 활용해 개인·기업·국가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 분야를 의미한다. 매출액은 직전 결산회기 기준으로 한다. 증빙서류: 별지 제5호서식(사후관리 시 별지 제5-1호서식), 공인회계사 또는 신청업체 회계담당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계산내역 등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지정심사 | | 사후관리 심사 | | | | | | | | | | |
|-----------------|--------------------------|----------------|------|--|---------|--|--------|---------|---|--------|----|--------|---|--------|---|
| | |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 | | | | | | | |
| | 교육지원체계 적합성 | 비율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배점의 100% • 최근 2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배점의 x% ※ $x = (40\text{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수} / \text{총 기술인력 수}) \times 100$ ※ 정보보호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교육 중심(일반 교양교육 제외) |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배점의 100% • 최근 1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배점의 x% ※ $x = (20\text{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수} / \text{총 기술인력 수}) \times 100$ ※ 정보보호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교육 중심(일반 교양교육 제외) | | | | | | | | | |
| 3. 신뢰도 (10)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가 등급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A ~ A- : 배점의 100% • BBB+ ~ BBB- : 배점의 80% • BB+ ~ BB- : 배점의 60% • B+ ~ B- : 배점의 40% • CCC+ 이하 : 배점의 20% | 5 | 지정 심사와 동일 | | | | | | | | | |
| | 정보보호 인증기업 | 인증 여부 평가 등급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업: ISMS 또는 ISO27001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table border="1"> <tr> <td>평가등급</td> <td>배점</td> </tr> <tr> <td>AAA~AA</td> <td>배점의100%</td> </tr> <tr> <td>A</td> <td>배점의80%</td> </tr> <tr> <td>BB</td> <td>배점의60%</td> </tr> <tr> <td>B</td> <td>배점의40%</td> </tr> </table> | 평가등급 | 배점 | AAA~AA | 배점의100% | A | 배점의80% | BB | 배점의60% | B | 배점의40% | 5 |
| 평가등급 | 배점 | | | | | | | | | | | | | | |
| AAA~AA | 배점의100% | | | | | | | | | | | | | | |
| A | 배점의80% | | | | | | | | | | | | | | |
| BB | 배점의60% | | | | | | | | | | | | | | |
| B | 배점의40% | | | | | | | | | | | | | | |
| 4. 기술 개발 실적 (5) | 최근 3년간 정보보호 분야 정부과제 수행실적 | 정부 지원 금액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 이상: 배점의 100% • 3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정부지원금총액} / 3\text{억원}) \times 100$ | 5 | 지정 심사와 동일 | | | | | | | | | |
| 5. 종합 심사 (15) | 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 | 비계량 |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론의 체계성·일관성 • 방법론의 타당성·적합성 • 방법론의 독창성 • 위험분석의 타당성 • 적용사례를 통해서 본 방법론의 우수성 ※ 보유 활용중인 기술적 /관리적 기술도구 포함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론의 체계성·일관성 • 방법론의 타당성·적합성 • 방법론의 독창성 • 위험분석의 타당성 • 적용사례를 통해서 본 방법론의 우수성 ※ 보유 활용중인 기술적 /관리적 기술도구 포함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심사 또는 직전년도 사후관리 심사 이후 방법론 | 5 | | | | | | | | | | |

| 해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술인력에 한하여 최근 2년간 40시간 이상(사후관리는 최근 1년간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율 완료한 기술인력의 비율을 평가한다. • 정보보호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보호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 교육 중심)이어야 하며, 일반 및 소양 교육은 제외한다. • 증빙서류: 별지 제8호서식, 교육실적 증빙을 위한 자료 ※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교육: 수료증 - 내부교육: 연간 교육계획서 및 결재문서, 교육교재, 교육결과서(강사 및 참석자 사진 포함) 및 결재문서, 참석확인증(교육 과정명, 교육 일시 및 장소, 수료기간 및 이수시간, 참석자 서명 포함)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하며, 중복 인정은 불가하다. • 증빙서류: ISMS인증서(ISMS-P 포함), ISO27001인증서, 정보보호 준비도 인증서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분야 기술개발(R&D)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서, 계약서(협약서) 내 정부 출연금과 신청업체의 민간부담금이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하다. • 증빙서류 : 정부과제 계약서, 협약서 등 ※ 다수의 기업이 정부출연금을 배분 할 경우, 정산보고서 등 신청업체의 실적 금액이 분명하게 확인 가능한 자료를 추가 증빙하여야 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 시 발표자료(PPT 등) 및 방법론 상세 자료 준비 ※ 컨설팅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기술적/관리적 기술도구 평가 포함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지정심사 | | 사후관리 심사 | | 해설 |
|-------|--|-------------|------|---|---------|----------------------|---|
| | |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
| 6. 기타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 확인 여부 | 가점 |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 이노비즈기업 확인 기업: 가점 5점 | 가점 | 개선도 지정 심사와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기간 내의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노비즈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점 5점을 부여한다.(중복인정불가) 증빙서류: 별지 제5호서식,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
| |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제한을 받은 기간 | 입찰 참가 제한 월수 | 감점 |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 감점 | 지정 심사와 동일 | |

11. 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관련 조문

제11조(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 ①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 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2. 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 ②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배분한다.

해설

- ①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 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 본 조항에서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를 위하여 컨설팅 수행실적 인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컨설팅 수행실적은 고시 제2조에 따른 정의에 기초한다.
 - 정보보호 컨설팅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일부분만 진행한 경우 불인정)으로서
 -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수행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 관제, 장비 납품, 개인정보보호 등 부가적인 실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실적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하며, 실적금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실적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행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관련 근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 컨설팅"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제1호에 대한 수행실적을 말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제, 장비 납품 등 부가적인 실적은 실적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2. 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컨설팅의 대가는 1천만원 이상(VAT 포함)이어야 하며, 1천만원 미만의 컨설팅 수행실적은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신청업체는 컨설팅 수행실적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수행실적은 계약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신청업체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발주사 실적증명서(날인본), 참여인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행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②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배분한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의 경우 계약금액만큼 실적 인정이 가능하며, 이 또한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시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컨설팅 수행실적은 신청업체의 지분 비율 또는 계약 금액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하다.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업지시서, 발주사 실적증명서(날인본), 세부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실적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에 해당 실적을 작성하고, 비교란에 계약 금액 비율 등 지분 정보를 기입한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진행한 컨설팅 수행실적은 계약 금액 비율만 인정한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진행한 컨설팅 수행실적은 계약서 등 서류에 명시된 계약 금액 비율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컨설팅 수행실적은 수급인의 실적에서 제외하며,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하도급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발주사의 하도급 승인 문서(하도급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 필요) 또는 발주사 실적증명서 날인본을 제출해야 한다.
- 공동수급이란, 2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급인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급여나 연금, 배급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 공동수급은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 하도급이란 건설업이나 제조업, 운송업,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도급인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맡겨 완료하는 계약을 말한다.
 - 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금액 및 기간, 계약의 조건, 계약 보증금, 대금 지급 시기, 수행업무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불인정 대표사례(예시) >

- SM(통합관리, 유지보수)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
- 개인정보보호 관련(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 실적
-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제시가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
- 보안관제, 안전진단 관련 실적, 자사실적이 아닌 외주 실적, 하수급 사업
- 그밖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가 누락된 실적
- (사후관리 심사 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인정되나요?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의 특성상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컨설팅 수행실적은 최근(지정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 기준) 3년 이내 종료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컨설팅 수행실적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에서 정보보안대책 수립이 일부 포함된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컨설팅 수행실적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안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인 사업이어야 인정 가능하므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정보보안 컨설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수행의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본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컨설팅 수행실적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또는 감사 용역 사업은 본 고시에 따른 정보보호 컨설팅을 주된 목적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수행의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본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컨설팅 수행실적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신청업체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Q 홈페이지 구축(또는 운영) 업무 내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의 및 조치 과업이 포함된 용역인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홈페이지 구축 등의 개발사업 내에서 수행되는 보안취약점 진단 등의 수행 실적은 본 고시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안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로 보기 어려워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보안관제 관련 프로젝트가 주된 사업인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본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정보보호 컨설팅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하므로 보안관제 사업의 수행범위 등을 고려해 본다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웹서비스 보안 진단이 주된 사업인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본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컨설팅 수행실적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안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웹서비스 보안진단 또는 정보통신 안전 진단 등의 사업은 수행범위에 따라서 기술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실적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청업체는 과업 수행 내용 및 범위, 세부산출내역서 등 실적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취약점 분석·평가 진단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하도급 등),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기업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실적은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되며, 도급인의 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Q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컨설팅 수행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컨설팅 수행실적은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고시 제11조 컨설팅수행실적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업체는 계약서(사본)과 세금계산서 자료를 필수로 제출하되, 해당 자료에서 수행실적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발주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날인) 등의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증빙하여야 합니다.

Q

최근 3년 수행실적과 계약서의 사업기간이 일부만 겹치는 경우 실적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실적이 고시 제11조에 따른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 대상기간과 겹치는 사업기간 동안 수행한 실적을 일할 계산하여 인정됩니다.

Q

컨설팅 실적이 계약서에는 총 1억원에 진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8천만원만 수령한 것으로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1억원 모두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A

해당 실적이 고시 제11조에 따른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계약금액이 아닌 증빙으로 제출 한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12. 보안대책

관련 조문

제12조(보안대책) 규칙 제8조 제5호 라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이라 함은 별표 3와 같다.

해설

- 규칙 제8조 제5호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서 고시 [별표 3]과 같이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문서 및 전산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기타 항목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별표 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별표 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제12조관련)

| 주요내용 | 비고 |
|---|------------------------|
| 1. 취약점분석업무(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업무수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이종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기술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취약점분석자료(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트북컴퓨터 기타 휴대용 정보처리기에 대한 통제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관련 |
| 3. 기술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의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와 신원조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기술인력이 관계법령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제반의무를 숙지하고 이의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기술인력을 채용할 때의 적격 심사와 퇴직할 때의 퇴직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체 내부 및 외부의 정보보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관련 |
| 8. 취약점분석자료 및 컨설팅 기술자료(도구포함)를 보안등급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9. 기술인력이 아닌 자는 취약점분석자료에 접근·열람·수집·편집·반출·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전송·보존하는 취약점분석자료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서면, 도면, 마이크로필름·전산출력물 등 출력물 형태의 취약점분석자료에 대한 보관·복사·배포·폐기 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관련 |
| 12. 정보보안에 관한 업체의 기본방침을 대표자가 서면으로 공표하고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3. 취약점분석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의 관리·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14. 사업자유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정보보안 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및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정보보안 관리규정에 따른 제반의무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타 |

13. 사후관리

관련 조문

제13조(사후관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23조 및 규칙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준수 여부를 사후관리 심사한다. 다만, 규칙 제8조 제4호는 별표 2의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중 사후관리 심사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 ②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 제8조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해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23조 및 규칙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준수 여부를 사후관리 심사한다. 다만, 규칙 제8조 제4호는 별표 2의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중 사후관리 심사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 제23조 및 규칙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준수 여부를 매년사후관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 사후관리 심사를 준비하는 기업은 최초 지정 심사와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청문을 거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 ②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 제8조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 제8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 내역, 보안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사후관리에 따른 심사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 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14. 재검토기한

관련 조문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 본 고시의 재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위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IV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 제출서류 안내

1. 개요
2. 심사 제출 방법 및 서류
3. 유형별 제출서류
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자체점검표
5. 별지 서식별 작성 방법



IV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 제출서류 안내



1. 개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지정 신청 접수 공고를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 신청 접수 공고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게시된다.

지정기준

| 지정기준 | 내용 | 관련 근거 | 심사단계 |
|--------------------|---|---|---------------|
| 인력요건 | •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10인 이상 (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 3명 이상 포함) |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 서류심사 |
| 자본요건 | •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10억원 이상 |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 |
| 업무수행 능력요건 | • 업무 수행능력 심사에서 기준 점수(70점) 이상을 받을 것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 서류심사, 현장실사 |
| 설비요건 | •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설비 • 업무* 수행 또는 지원 설비 *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보호대책 수립 업무 등(법 제23조 제1항) •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 현장실사 |
| 정보보호 관리규정 요건 | • 정보보호 관리규정 및 준수 여부 -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보안대책 |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 |

※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의 세부 기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확인

2. 심사 제출 방법 및 서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심사를 위해 신청업체는 공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서식별 요구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 및 평가기준 내 명시된 기간은 고시 제2조에 의거 지정 신청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사후관리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지정심사 제출 서류와 동일하며, 사후관리 심사 서류접수는 지정 기업에게 별도 안내를 통해 이메일로 접수하고 있다.

※ 예시 2024년 6월 3일(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 2021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예시 2024년 4월 12일(사후관리 서류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정심사) 지정신청 접수 공고 확인, (사후관리) 대상 기업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제출서류는 암호화 및 압축하여 k-consulting@kisa.or.kr로 제출
- **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 단, 심사 기초데이터 파일(별첨 엑셀양식)은 요구 양식의 파일 형식 그대로 제출
 - 제출서류는 일반편, 실적편, 인력편, 설비 및 관리규정, 기타와 같이 각각의 폴더로 구분 생성하고,
 - 폴더별 증빙 자료는 하위폴더 생성 후 첨부하고, 하위폴더명은 상위폴더의 번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ex. 1. 일반편(상위폴더) - 1-01. 정관(하위폴더)
- **관련 문의** : 이메일(k-consulting@kisa.or.kr)

< 제출자료 폴더 구성(예시) >

| 구분 | 1. 일반편 | 2. 실적편 | 3. 인력편 | 4. 기타 |
|----------|---|----------|---------------|-------------------|
| 1 일반편 | 1-01. 정관 | | 3-01. (특급)홍길동 | [양식1] 심사 기초데이터 작성 |
| 2 실적편 | 1-02. 법인등기부등본(발소사항포함) | 2-01. 실적 | 3-02. (고급)김철수 | |
| 3인력편 | 1-03. 대표자 및 임원 명단(별지 제3호서식) | 2-02. 실적 | 3-03. (중급)김진수 | |
| 4설비및관리규정 | 1-04. 외국인투자 증명 등(해당시) | 2-03. 실적 | 3-04. (초급)김영희 | |
| 5기타 | 1-05. 자본총계 확인 서류 1-06.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별지제5-1호서식) 1-07. 기타 | | | |

**심사 제출서류(요약)**

| 제출 서류 | | 비고 | |
|------------------------------|-----------------------------|---|-------------|
| 서류접수 공문 1부 |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날인본) 1부 | |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후관리 심사 시 생략) | |
| 일반편 | 정관 | 현행 정관 | |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1개월 이내 발급 | |
| | 대표자·임원 명단 |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 | 외국인투자 관련 증명서류 | (해당 시) | |
| | 재무제표 자본총계 확인 서류 |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 | |
| |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 | (지정심사)고시 별지 제5호서식 (사후관리 심사)고시 별지 제5-1호서식 | |
| |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 증빙자료 | 사후관리 심사 시 생략 | |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유효기간내 | |
| | 정보보호 인증기업 관련 증명서 | 유효기간내 | |
| | 최근 3년간 정보보호 분야 정부과제 실적 일체 | | |
|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 유효기간내 | |
| | 컨설팅 방법론 등 발표자료 | | |
| 실적편 |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 | 컨설팅 수행실적 관련 증빙자료 일체 | | |
| | 컨설팅 참여인력 확인 증빙자료 일체 | | |
| 인력편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 | 인력 별 제 출 | 경력 및 실적증명서(날인본) |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 | | 기술인력 교육관리카드 |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 | | 재직증명서(현 직장) | 1개월 이내 발급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 |
| |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일체 | |
| | | 경력증명서(과거 직장)(날인본) 일체 | |
| | | 관련 자격증 사본 일체 | |
| 교육 증빙자료 일체 | | | |
| 설비 및 관리규정편 | 설비보유현황 |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자체점검표 결과 |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
| 기타 | 지정 심사 기초데이터 파일(별첨 엑셀양식)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개월 |
|------|-----------------|--|-----|
| 신청인 | 업체명 | 설립 연월일 |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 소재지 | 팩스번호 | |
| | 자기자본 |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수행실적 | 외 건(총 백만원) | |
| | 직원 수 | 총 명, 그 중 기술인력의 수 ()명, 고급 기술인력의 수 ()명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 수수로 없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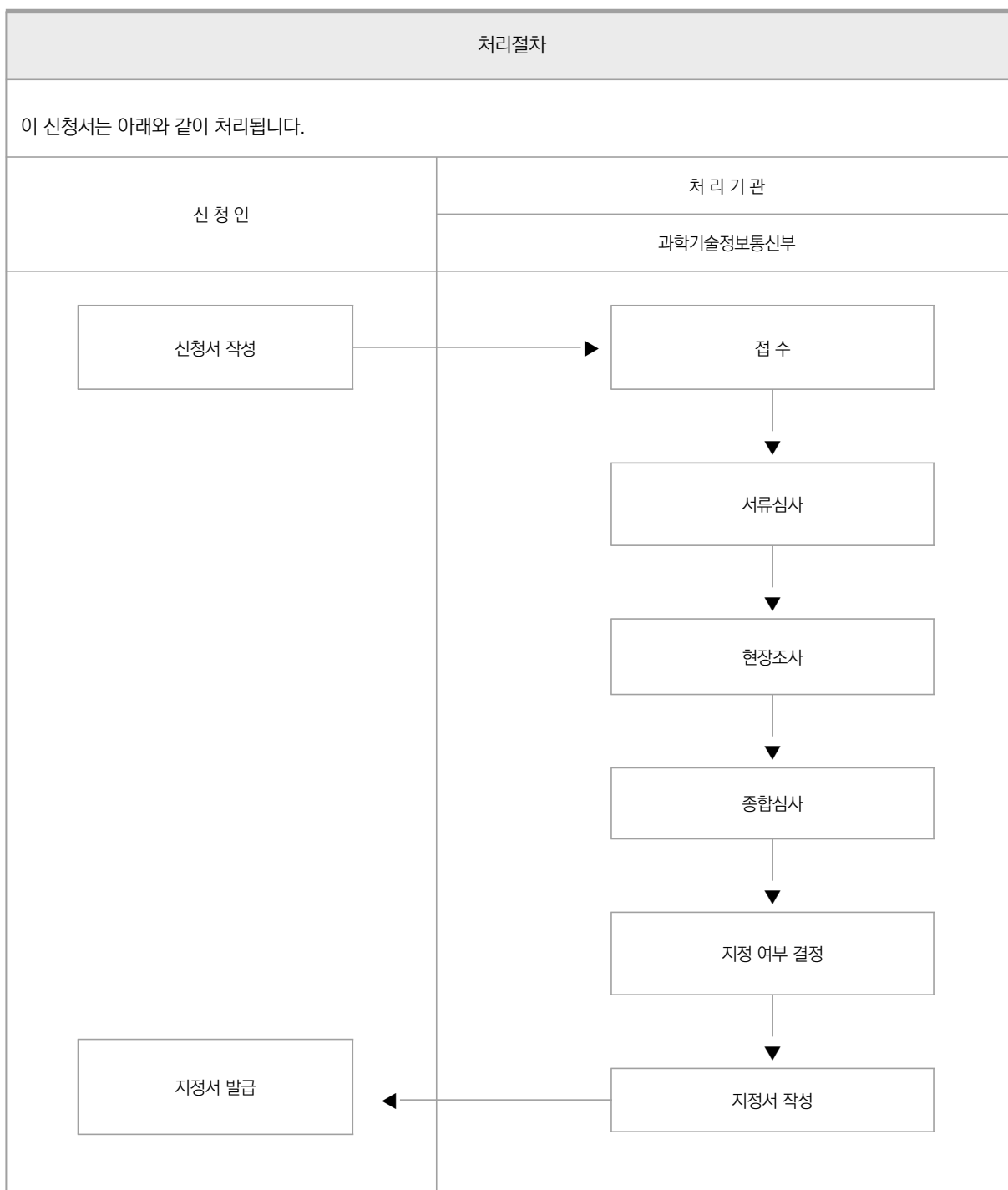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유형별 제출서류

(1) 일반편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지정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원칙
- 대표자·임원 명단(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사내이사만 해당
 - ※ 신고일의 경우 지정심사는 신청일로 기입
- 외국인투자 관련 증명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확인을 위한 서류
 - ※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계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고시 제4조)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 규칙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제1항 제5호 >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고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
 - 업무수행능력심사 항목 중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은 지정심사 평가 대상으로서(사후관리 심사 시 제외),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 신청업체 회계담당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계산내역 별도 증빙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확인받은 기업신용평가서(유효기간 내)
- 정보보호 인증기업 증명서(해당 시)
 - ISMS-P 또는 ISO27001 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 최근 3년*간 정보보호 분야 정부과제 실적 계약서(해당 시)
 - * 최근이란 지정 신청일 직전 분기 말 기준을 말함(고시 제2조)
 - 정보보호분야 국가·공공기관의 기술개발(R&D)로서, 협약서 내 정부출연금과 신청 업체의 민간부담금이 명시되어야 인정 가능함
 - 여러 기업이 정부출연금을 배분 할 경우, 지원금 비율 자료 및 정산보고서 등 증빙을 통해 신청 업체의 금액을

분명하게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노비즈기업 인증서(유효기간 내)(해당 시)
 - 가점 5점 부여(중복 불가)
- 컨설팅 방법론 등 발표자료(고시 별표2 업무 수행능력 심사)
 -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 시 업무 수행능력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서 방법론의 체계성·일관성·타당성·적합성·독창성, 위험분석의 타당성, 적용사례를 통해서 본 방법론의 우수성 및 교육지원체계 등에 대한 발표자료(초안)제출
 - 컨설팅 방법론 상세자료는 현장실사 시 별도 준비하여야 함
 - ※ 사후관리 심사는 직전 년도 방법론 개선 사항 및 실적을 포함하여야 함
 - ※ 발표자료는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 시 보완 또는 수정 된 자료로 활용 가능하나, 최종 발표자료는 k-consulting@kisa.or.kr로 제출하여야 함

(2) 실적편

-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별지 제1호서식)
 - 지정심사 시 최근 3년*간 고시 제11조에 따른 컨설팅 수행실적 평가
 - * 최근이란 지정 신청일 직전 분기 말 기준을 말함(고시 제2조)
 - 단, 사후관리 심사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수행 완료한 실적만을 인정하며, 서류 제출일 직전 분기말 기준 최근 1년간 수행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 심사 대상 기간에 일부 포함 된 실적은 일할 계산 후 인정 가능
- 컨설팅 수행실적 확인을 위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
 - 고시 제11조에 따라 컨설팅 인정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서, 컨설팅 수행실적은 종료된 사업에 한하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필수 제출
 - ※ 제출 된 계약서가 컨설팅 수행실적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업체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발주사 날인본) 등 컨설팅 수행실적임을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
 -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 불가
- 컨설팅 수행실적에 대한 참여인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최근 3년간 신청업체에서 컨설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의 비율을 평가하기 위함
 - * 고시 제11조 컨설팅 수행실적의 인정요건을 충족한 수행실적에 한함
 - **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에 한함
 - 신청업체는 계약서, 산출내역서, 발주사에서 발급한 참여인력확인원 등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통해 명확하게 프로젝트 참여인력의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 불가
 - ※ 참여인력 확인을 위한 서류 예시 : 업무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참여인력 실적증명서 등
 - ※ 프로젝트 참여인력 실적증명서는 고시 별지 제6호서식(발주처 관인 등의 날인 필수) 활용 가능
 - 단, 사후관리 심사는 해당사항 없음

(3) 인력편

아래 별지 서식을 제외한 모든 제출자료는 기술인력별 폴더로 구분하고 인력별 하위 폴더를 통해 개별 증빙자료 첨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고시 별지 제2호서식)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순으로 작성
- 경력 및 실적 증명서(고시 별지 제6호서식)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경력 및 실적에 한하여 작성하며, 기술인력의 경력 및 등급 산정과 지정심사 시 최근 3년간 신청업체에서 컨설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의 비율을 평가 시 활용함
- 기술인력 교육관리 카드(고시 별지 제8호서식)
 - 최근 2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을 평가하기 위함으로서, 기술인력별 교육이수 등 증빙자료 일체 별도 제출
 - * 최근이란 지정 신청일 직전 분기 말 기준을 말함(고시 제2조)
 - 고시 제11조 컨설팅 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이 주된 내용이어야 하며,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 외의 교육, 일반교양 및 소양교육은 제외
- 재직증명서(현 직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원칙
- 건강보험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원칙
 - 기술인력의 경력 및 등급 산정과 지정심사 시 최근 3년 이상 재직 중인 기술인력 수의 비율 평가 시 근거자료로 활용
 - 과거 직장에 대한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일체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일체 제출 원칙(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등)
 - ※ 박사 학위 취득자인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과거 직장 경력증명서(날인)
 - 경력증명서 내 수행직무 확인 불가 시 경력불인정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사본
 -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이어야 인정
- 기술인력별 교육이수 증빙자료 일체
 - 지정심사 시 최근 2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40시간 이상(사후관리 심사 시 최근 1년간 기술인력이 모두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 평가
 - * 최근이란 지정 신청일 직전 분기 말 기준을 말함(고시 제2조)

- 고시 [별표 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서,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관련 교육에 한하여 인정 가능
- ※ 일반교육, 소양교육, 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컨설팅(고시 제2조)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 외의 교육은 인정 불가
- ※ 증빙자료(예시)
 - (외부교육) 수료증
 - (내부교육) 연간 교육계획서 및 결재문서, 교육교재, 교육결과서(강사 및 참석자 사진 포함) 및 결재문서, 참석확인서 (교육 과정명, 교육 일시 및 장소, 수료기간 및 이수시간, 참석자 서명 포함) 등

(4) 설비 및 관리규정

[참고] 보안대책 자체점검표를 통해 점검 항목 및 방법 등 확인

- 설비보유현황(고시 별지 제4호서식)
 - 규칙 제8조 제3호의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누락 없이 작성하여 제출
 - 지정 심사(또는 사후관리 심사) 시 신청업체의 자체 점검표* 결과 자료 제출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자체점검표 양식(해설서 P.68)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현장실사 시 점검표 내 항목별 이행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운용실적 포함) 별도 준비

< 규칙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제3호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해야 함
 -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 나.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 다. 업무 관련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 규칙 제8조 제5호 및 고시 [별표 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에서 정하는 각 호의 내용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지정 심사(또는 사후관리 심사) 시 신청업체의 자체 점검표* 결과 자료 제출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자체점검표 양식(해설서 P.68)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현장실사 시 점검표 내 항목별 이행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신청일 기준 2개월간의 운용실적 포함) 별도 준비

< 규칙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제5호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 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가. 업무 수행 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 나.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고시 별지 제7호서식)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자산을 누락 없이 작성하여 제출

(5) 기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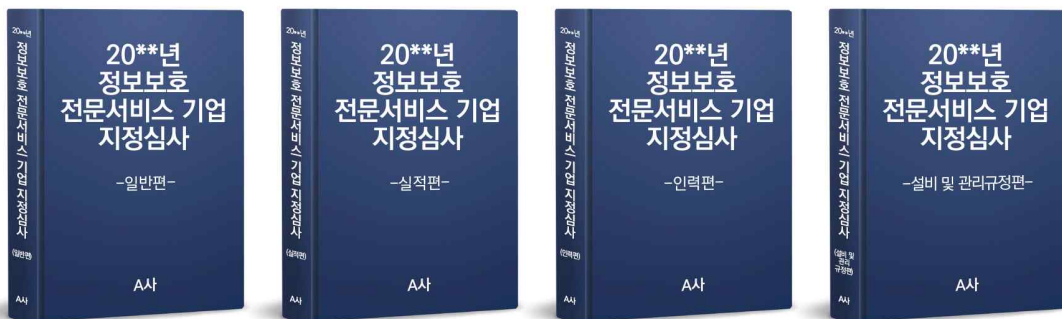
- 심사 기초데이터 파일(별첨 엑셀양식)
 - 기술인력별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정보는 [별지 제2호서식] 작성 내용과 동일한 순서(특급, 고급, 중급, 초급 순)로 인원수만큼 개별 작성해야 함
 - 엑셀양식에 기술인력 정보 작성 시 기술인력 인원수대로 개별 탭을 추가 후 작성하며, 각 탭의 이름은 기술인력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함

참고

- 현장실사 일시 및 장소 : 신청업체와 상호협의 후 정함
- 현장실사 소요시간 : 약 4시간 이내
- 현장실사 추가 준비사항

| 구분 | 준비사항 |
|---------|---|
| 발표 | • 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 발표자료, 컨설팅 방법론 상세 내용 |
| 자체점검 결과 | • 취약점 분석실 설비 및 정보보호관리규정 등 자체점검표 점검 결과 및 증빙자료 |
| 기타 | • 서류 심사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현장 확인 • 유형별 제출자료 하드카피(또는 노트북 비치) ※ 하드카피 자료 준비 시 유형별 자료는 각각의 바인더를 구성하되, 개별 바인더 내 목차 및 인덱스 탭 구분 요망 |

< 하드카피 자료 바인더 구성 예시 >



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자체점검표

□ 인력 요건 유지여부

규칙 제8조 제1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1. 별표 1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EI-02-01) | 인력 요건 유지여부 |
|------------|---|
| 점검항목 | • 기술인력(고급 이상 3명 포함) 10명 이상 보유 여부 |
| 준비자료 | • 기술인력 명부(1년 내 퇴직자 포함) • 기술인력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 |
| 점검방법 | • 기술인력 명부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을 통한 기술인력(고급 이상 3명 포함) 10명 이상 유지여부 확인 • 기술인력 변동사항(이력, 출장, 병가, 교육 등)에 대한 이력관리 상황 확인 ※ 변경된 인력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점검 |

□ 자본요건 유지여부

규칙 제8조 제2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2.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 (EI-03-01) | 자본 요건 유지여부 |
|------------|--|
| 점검항목 | • 자기자본 10억 이상 여부 |
| 준비자료 |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 기준) |
| 점검방법 | • 기업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10억 이상 여부 확인 |

□ 설비조건 유지여부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3.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 나.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 다.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 (EI-04-01) | 설비 요건 유지여부 |
|------------|--|
| 점검항목 | •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마련 및 출입 로그기록 유지 여부 |
| 준비자료 | • 통제구역 입·출입 로그기록 |
| 점검방법 | • 현장에서 로그기록 및 설비 육안으로 확인(예: 스마트카드, 지문인식 시스템 등) |

| | |
|------------|---|
| (EI-04-02) | 설비 요건 유지여부 |
| 점검항목 | • 취약점 분석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마련 및 유지 여부 |
| 준비자료 | • 없음 |
| 점검방법 | •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예: 스캐닝 툴 등) |

| | |
|------------|--|
| (EI-04-03) | 설비 요건 유지여부 |
| 점검항목 | • 취약점 분석업무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 마련 및 유지 여부 |
| 준비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점 분석업무 자료를 취급·저장하는 PC 및 서버 리스트 • 취약점 분석공간의 네트워크 구성도 (침입차단시스템 등이 표기된 것) • 해당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의 룰셋(Rule Set) 사본 • 추가 보안설비(IDS, IPS 등) 여부, 필요시 룰셋 사본 • 암호화 지원 시 키 관리 및 운영방안 |
| 점검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료의 암호화 저장여부 및 관련 장비의 접근제어 설정상태, 파일별 접근가능자 상태, 디렉토리의 별도 관리여부, 하드카피의 안전 보관여부 등 확인 • 취약점 분석 자료를 취급·저장하는 PC 또는 서버가 취약점 분석 공간 내에 존재하는지, 제출한 기기 리스트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PC password 설정 여부 확인(부팅 시, 화면보호기 등) • 보안제품 설치 여부 확인(FireWall, IDS 등 : 공개용 가능) • 정보통신망에 대한 외부 및 내부자 접근통제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망과 분리된 망을 사용하거나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이 취약점분석공간과 내부 망 사이에 존재하는지 점검 - 외부 또는 내부자의 접근이 차단되도록 침입차단시스템의 룰셋(Rule Set)이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 - 서버 로그의 보관기간 및 보관상태 점검 - 암호화 지원 및 키 관리 여부 점검 |

□ 정보보호관리규정 준수여부

규칙 제8조 제5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5.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 할 것
- 가.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 나.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라.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보호대책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보안대책)

규칙 제8조 제5호 라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보호대책”이라 함은 고시 별표 3과 같다.

| | |
|--------------|---|
| (EI-05-01-1)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업무수행 구역에 대한 보호대책】 |
| 점검항목 | • 취약점 분석업무 수행구역이 사무실 공간과 분리된 별도 공간으로 마련되었는지의 여부 |
| 준비자료 | • 없음 |
| 점검방법 | •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 |
| (EI-05-01-2)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업무수행 구역에 대한 보호대책】 |
| 점검항목 | • 취약점 분석업무 수행구역의 이중출입통제장치 기능 지원 여부 |
| 준비자료 | • 없음 |
| 점검방법 | •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예: 스마트카드, 지문인식 시스템 등) |
| (EI-05-01-3)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업무수행 구역에 대한 보호대책】 |
| 점검항목 | • 취약점 분석자료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 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준수여부 |
| 준비자료 | • 위험분석 보고서 및 보안감사 보고서, 위반자 조치내역 관련자료 |
| 점검방법 | • 위험분석 보고서 및 보안감사 보고서에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분석 및 점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 (EI-05-01-4)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업무수행 구역에 대한 보호대책】 |
| 점검항목 | • 노트북 컴퓨터 등 기타 휴대용 정보처리기기(USB, 스마트폰 등)에 대한 통제대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 준비자료 | • 노트북용 휴대용 정보처리기기(USB, 스마트폰 등) 관리대장 • 위험분석 보고서 및 보안감사 보고서, 위반자 조치내역 관련자료 |
| 점검방법 | • 위험분석 항목에 휴대용 기기에 대한 점검 목록 포함여부 및 보안감사 시 휴대용 기기에 대한 감사 실시여부 확인 • 부팅 패스워드 설정여부 확인 •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여부 확인 • 퇴사자가 사용한 휴대용 정보처리기기를 인수인계 관리대장을 통하여 점검 • 이동매체 이력관리 및 접근통제, 로그존재 여부 |
| (EI-05-02-1)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
| 점검항목 | • 기술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와 신원조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지의 여부 |
| 준비자료 | • 기술인력 변동되는 경우의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와 신원조사 절차서 |
| 점검방법 | • 관련 내부규정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기술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신원조사 절차 마련 여부 -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여부 - 관계 법령에 따른 신원조사 여부 |

| (EI-05-02-2)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
|--------------|---|
| 점검항목 | • 기술인력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제반의무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지침 마련 및 준수 여부 |
| 준비자료 | • 기술인력의 비밀유지 관련 지침 • 기술인력의 비밀유지 서약서 |
| 점검방법 | • 비밀유지 서약서 지침 유무 및 비밀유지 관련 조항 확인 • 기술인력들이 서명한 비밀유지 서약서 원본을 육안으로 확인 |

| (EI-05-02-3)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
|--------------|---|
| 점검항목 | • 기술인력을 채용할 때의 적격 심사와 퇴직할 때의 퇴직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및 준수 여부 |
| 준비자료 | • 기술인력의 퇴직자 관리 관련 지침서 • 퇴직자 접근했던 공간, 자료, 시스템 등의 리스트 와 해당 계정(ID) 내역 |
| 점검방법 | • 기술인력의 퇴직자 관리 관련 지침서에 기술된 절차 확인 • 접근허용 계정들에서 퇴직자의 계정이 제거 되었는지 확인 |

| (EI-05-02-4)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
|--------------|---|
| 점검항목 | • 정보보호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 및 처리지침 마련 및 준수 여부 |
| 준비자료 | • 정보보호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지침 |
| 점검방법 | • 정보보호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지침에 명시된 절차 확인 ※ 위반 처리자가 있을 경우 해당 명단을 확인하고, 그 외는 생략함 |

| (EI-05-02-5)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
|--------------|---|
| 점검항목 | •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체 내부 및 외부의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
| 준비자료 | • 당해 연도 정보보호 교육 계획표 및 실적 근거자료 |
| 점검방법 | • 정기적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계획 대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 |

| (EI-05-03-1)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
| 점검항목 | • 취약점분석자료를 보호등급에 따라 분류·유지하는지의 여부 |
| 준비자료 | • 보호등급이 표기된 산출물 및 보관자료 리스트 • 자료의 분류 기준표(보호등급) |
| 점검방법 | • 산출물 및 자료들이 보호등급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가 점검 • 분류된 산출물 및 자료들이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는가 점검 • 보호등급이 표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변경, 폐기, 열람 등) 점검 |

| (EI-05-03-2)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
| 점검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취약점분석 자료에 접근·열람·수집·편집·반출·폐기 할 수 없도록 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 점검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점분석 공간 출입통제 로그기록, 출입대장 또는 DB (최근 6개월 이내의 로그기록 또는 출입대장 사본) 최근 1년 이내의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프로젝트의 참여 인력 내역 |
| 점검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그기록상의 출입 인력과 기술인력 명부상의 인력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그기록이 방대할 경우 아래와 같은 샘플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프로젝트 수행기간내의 특정기간 샘플 검사 - 평상시 출입기록 샘플 검사 비 인가된 출입자의 출입 테스트 실시(일반사무 직원 중) |

| (EI-05-03-3)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
| 점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 도면, 마이크로필름, 전산출력물 등 출력물 형태의 취약점분석 자료에 대한 보관·복사·배포·폐기 등에 관한 통제 대책 강구 여부 |
| 준비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점분석 자료에 대한 통제대책(보관, 복사, 배포, 폐기에 관한) 취약점분석 자료에 대한 보관, 복사, 배포, 폐기 기록 및 대장 |
| 점검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점분석 자료의 보관 규칙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규칙에 따라 보관되어 있어야 할 자료의 실제 존재 점검 - 보관자료 대장 관리 점검 - 자료의 백업상태 점검 취약점분석 자료의 복사 규칙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수량 관리 및 복사본 방치 등 점검(실제 확인 생략) 취약점 분석 자료의 배포 규칙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포된 자료의 관리번호 점검 - 개인에게 또는 휴대용 정보처리기 등에 배포된 자료와 관리대장 내역의 확인 취약점분석 자료의 폐기 규칙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된 자료 대장 점검 - 폐기규칙에 따라 폐기되어야 할 자료가 아직 존재하는지 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자료의 통제대책 이행 점검 |

| (EI-05-04-1) |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기타】 |
|--------------|--|
| 점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에 관한 업체의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대표자가 서면으로 공표하고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
| 준비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관리규정 |
| 점검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관리규정 버전 관리 유지 여부 정보보호관리규정의 전결원칙 및 대표자의 서명 날인 여부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한 정보보호관리규정 숙지여부 |

| (EI-05-04-2)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기타] | |
|---------------------------------------|---|
| 점검항목 | • 취약점분석 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지 여부 |
| 준비자료 | • 취약점분석 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 관련 점검/평가 일지 |
| 점검방법 | • 취약점분석 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 관련 점검/평가 일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 |

| (EI-05-04-3)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기타] | |
|---------------------------------------|---|
| 점검방법 | • 사업자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 |
| 점검방법 | • 사업자윤리강령 |
| 점검방법 | • 사업자윤리강령 존재 여부 • 직원들의 인터뷰를 통한 사업자윤리강령 숙지 여부 |

| (EI-05-04-4) 정보보호관리규정준수 여부[기타] | |
|---------------------------------------|--|
| 점검항목 | • 정보보호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및 변경절차 마련 여부 • 정보보호관리규정에 따른 제반의무의 이행에 관한 기록 유지 여부 |
| 준비자료 | • 정보보호관리규정 위반 처리지침 • 정보보호관리규정 위반 처리자 명단 |
| 점검방법 | • 정보보호관리규정 위반 처리지침 존재 여부 • 위반 처리자가 존재하면 그 명단을 확인하고 그 외는 생략함 |

5. 별지 서식별 작성 방법

〈 업무수행능력심사 제출서류 목록 〉

- [별지 제1호서식] 컨설팅 수행 실적 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별지 제3호서식] 임원 명단
- [별지 제4호서식] 설비보유현황
- [별지 제5호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최초지정)
또는 [별지 제5-1호 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사후관리)
- [별지 제6호서식]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 [별지 제8호서식] 기술인력 교육관리 카드

(1) [별지 제1호서식] 컨설팅 수행 실적 명세서

|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컨설팅 수행 실적 명세서 | | | | | | |
| 업 체 명 | 00 컨설팅 | | | | | |
| 기 간 | 2023. 1. 1. ~ 2023. 12. 31. | | | | | |
| 컨설팅수행실적 총계 | ~ 정보보호 컨설팅(한국인터넷진흥원) 외 1건 (총 650,000 천원) | | | | | |
| 일련 번호 | 프로젝트명 (대상기관(기업)명) | 수행기간 (총 참여 M/M) | 과제 책임자 | 금액 (천원) | 참여인력 (개인별 참여율 (M/M)) | 비고 (기반시설 여부/ 컨설팅 지분 등) |
| 1 | ~ 정보보호 컨설팅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3. 1. 1. ~ 2023. 12. 31. (12M/M) | 홍길동 | 500,000 | 홍길동 12M/M 김철수 6M/M 김영희 6M/M | 기반시설 해당/ 단독계약 100% |
| 2 | ~ 정보보호 컨설팅 (**진흥원) | 2023. 7. 1. ~ 2023. 12. 31. (6M/M) | 이철수 | 150,000 | 이철수 6M/M 김철수 6M/M 김영희 6M/M | 기반시설 해당/ 공동계약 50% |

- 상기 서식은 고시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컨설팅 수행실적에 대한 업체명, 기간, 컨설팅 수행실적 총계(VAT 포함), 컨설팅 수행실적 상세내용(일련번호, 프로젝트 및 기관명, 수행기간, 과제책임자, 금액, 참여인력 등)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예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필수), 과업내역서, 세부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날인) 등

- 컨설팅 수행실적은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하므로, 종료 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증빙자료로 제출 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작성하되, 공동수급 및 하도급 수행실적은 해당 계약 금액 비율만큼 기재하며 공동계약, 하도급계약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작성한다.

(2)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 | | | |
|--|-----|------------|---------------------------------|------------|------------|-----------------------|----|
| ※최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신청)일부터 기술인력 신고 순으로 연속기록(퇴직자포함) | | | | | | | |
|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OO 컨설팅 | | | | |
| 기술인력 총수(현재) | | | 초급(10)명, 중급(7)명, 고급(8)명, 특급(5)명 | | | | |
|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입사일 | 신고일 | 퇴사일 | 인력구분 (초급/중급/고급/특급) | 비고 |
| 1 | 홍길동 | 1988-01-01 | 2017-03-01 | 2017-03-15 | - | 특급 | |
| 2 | 김철수 | 1992-05-01 | 2000-05-01 | 2000-05-30 | 2000-12-31 | 중급 | |
| 3 | 김영희 | 1993-04-01 | 2000-05-01 | 2000-05-30 | - | 중급 | |
| 비고 | | | | | | | |
| 1. 「인력구분」란에는 당해 기술인력이 충족하는 규칙 별표1 각호의 번호를 기재한다(이 경우 규칙 별표1 각 란을 초급보유, 초급미보유, 고급보유, 고급미보유, 고급예외 등으로 구분하고 "초급보유1", "고급예외가목" 등으로 기재한다). | | | | | | | |

- 상기 서식은 신청업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인력구분 등 세부정보를 최초 지정 신청일부터 연속하여 기록한다.
 - 입사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내 자격 취득일
 - 신고일 : 최초 지정 신청업체의 경우 신청일을 기입하며, 지정 기업의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변동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한 신고일을 기입
 - 인력구분 :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 기입 (등급별 번호 생략 가능)
 - 비고 : 지정신청 기업의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기간(예:3년6개월)을 기입하고 지정 기업의 경우 기술인력 변경 사항 발생에 따른 신고 시 신규 등재, 등급 변경, 말소 등을 기입

(3) [별지 제3호서식] 임원명단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임원 명단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상 현 임원에 한하여 작성 | | | | |
| 업체명 | OO 컨설팅 | | | |
| 성명 | 생년월일 | 직위 | 신고일 | 비고 |
| 김대표 | 1964. 6. 2. | 대표이사 | 2024. 1. 1. | |
| 박이사 | 1958. 6. 2. | 사내이사 | 2024. 1. 1. | |
| | | | | |

- 상기 서식은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
 - 성명 :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한하여 기입하며, 사외이사 및 감사는 제외
 - 신고일 : 지정 신청일 또는 변경 신고일을 기입
 - ※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정 기업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4) [별지 제4호서식] 설비보유현황

|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설비보유현황 | | | | | |
| 업 체 명 및 대 표 자 서 명 | | | | | |
| 소 재 지 | | | | | |
| 구분 | 명칭 | 제조 회사 | 도입연월일 | 주요 기능 | 비고 |
| | | | 도입 금액 | | |
|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설비 | | | | | |
| | | | | | |
| 나. 업무수행 및 지원설비 | | | | | |
| | | | | | |
| 다.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설비 | | | | | |
| | | | | | |

- 상기 서식은 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 소재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설비, 업무수행 및 지원설비,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설비 정보를 기재한다.
 -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설비 : 해당 설비 기재
 - 업무수행 및 지원설비 : 기업이 보유한 업무용 PC, 노트북 또는 모니터가 아닌 취약점 분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 기재
 -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설비 : 방화벽·IDS, 암호화설비, 보안SW 등 기재

(5)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1호서식] |
|---|---|
|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최초지정) | 업무수행능력심사자료(사후관리) |
| I.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1)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총매출액: 천원 (2)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정보보호 분야의 매출액: 천원 (3)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 | I.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1) 사후관리 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총매출액: 천원 (2) 사후관리 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정보보호 분야의 매출액: 천원 (3) 총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의 비율: % |
| II. 기술인력의 수 (1) 최근 3년간 신청업체에서 컨설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 명 (2) 중급 이상의 기술인력: 명 (3) 최근 3년 이상 재직 중인 기술인력: 명 (4) 연 평균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명 | II. 기술인력의 수 (1) 중급 이상의 기술인력: 명 (2) 연 평균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 명 |
| III. 기타 (1)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여부 (○,X) (2) 조달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경험 여부 (○,X) | III. 기타 (1) 조달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경험 여부 (○,X) |
| 비고 1. 1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신청업체 회계담당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계산내역을 첨부한다. 2. 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한 금액으로 한다). | 비고 1. 1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신청업체 회계담당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계산내역을 첨부한다. 2. 정보보호 분야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보보호 분야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상기 서식은 고시 [별표 2] 업무 수행능력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신청업체에서 각 항목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작성하고, 각 항목별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예시 >

- 최근 3년간 신청업체에서 컨설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 명단
 - 기술인력별 프로젝트 수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6호서식 활용 가능)
 - 최근 3년 이상 재직 중인 기술인력 명단
- 1항의 “정보보호 분야”란 정보보호산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암호·인증·인식·감시 등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보안 기술을 활용해 개인·기업·국가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 분야를 의미한다.

- 기술인력의 실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통해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참여인력 확인을 위한 서류 예시 : 업무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참여인력 실적증명서 등
 - ※ 프로젝트 참여인력 실적증명서는 고시 별지 제6호서식(발주처 관인 등의 날인 필수) 활용 가능
- 주요정보통신시설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수행 시, 투입인력은 상기 서식을 통해 기술인력으로 등재 된 인력만이 투입 가능하다.
 - 인적사항 : 기술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기입
 - 경력사항 : 현재 재직 회사에 한하여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입
 - 실적사항 : 현재 재직 회사에 한하여 지정 심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 최근 1년간 기술 인력이 수행한 컨설팅 프로젝트 실적사항을 기입

Q&A

Q 별지 제6호서식에 모든 실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 기술인력이 최근 3년 동안 재직 중인 기업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컨설팅 수행실적에 대해서 제출 가능하며,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신청 기업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실적에 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미제출 된 실적에 대해서도 컨설팅 수행실적 2회 이상 기술인력 비율에 인정되나요?

A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 내 경험부문의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중 심사를 통해 인정 받은 실적에 대해 평가합니다.

(7) [별지 제7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별지 제7호서식]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자산 보유목록 | | | | | | |
|--|------------|---------|--------------|------------|------------|-------------------------|
| 업 체 명 | | OO 컨설팅 | | | | |
| 순번 | 기술자산명 | 기술자산 버전 | 용도/기능/응용분야 | 생성일 | 폐기일 | 비고 (공개용/상용/ 자체개발 여부) |
| 1 | 컨설팅 수행 방법론 | 3.0 | 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 | 2021.01.01 | - | 상용 |
| 2 | 서버 진단 시스템 | 1.0 | 서버 진단 | 2020.01.01 | 2021.03.10 | 2021년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폐기 |
| | | | | | | |
| 비고 기술자산 관리방법: 시스템 구축 또는 매뉴얼 프로세스 등 기재 | | | | | | |

- 상기 서식은 신청업체에서 관리 중인 기술자산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서식으로서, 컨설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또는 방법론, 매뉴얼(프로세스), 기술도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현재 사용 중인 기술자산명, 용도/기능/응용분야, 자산생성일, 변경이력(버전) 등을 기입하며, 폐기 된 자산은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기입한다.
- 비고란에는 공개용/상용/자체개발여부 또는 자산폐기 사유 등을 기입한다.

(8)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기술인력 교육관리 카드 | | | | |
|--------------|------|----------------|--------------------------------|---------------|
| 업 체 명 | | OO 컨설팅 | | |
| 성 명 | 인력구분 | 교육제목 | 기간 (이수시간) | 담당강사 (소속) |
| 김철수 | 중급 | CISA 자격증 취득 | 2023.1.5.~2023.2.28 (72H) | 김영희 (라이지움) |
| 김하니 | 고급 | 안드로이드/iOS 공격방법 | 2023.10.1.~2023.10.2. (16H) | 고길동 (KISA) |
| | | CISA 자격증 취득 | 2023.1.5.~2023.2.28. (72H) | 김영희 (라이지움) |

- 상기 서식은 신청업체의 교육지원체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함으로서, 기술인력 별 교육 제목, 교육 기간 및 이수 시간, 교육담당강사와 소속 등 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예시 >

- (외부교육) 수료증
- (내부교육) 연간 교육계획서 및 결재문서, 교육교재, 결과서(강사 및 참석자 사진 포함) 및 결재문서, 참석확인증(교육과정명, 교육 일시 및 장소, 수료기간 및 이수시간, 참석자 서명 필수 포함) 등

- 기술인력별 교육은 고시 제11조에 따른 컨설팅 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이 주된 내용이어야 하며,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 외의 교육, 일반교양 및 소양교육은 제외한다.
 - 성명/인력구분 :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입
 - 교육제목 : 수료증 또는 참석확인증에 기재된 교육제목과 동일하게 기입
 - 기간(이수시간) : 교육 기간과 이수 시간 기입
 - ※ 기간(이수시간)은 심사 대상기간에 수료한 교육으로서 수료증 또는 참석확인증에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및 이수 시간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담당강사(소속) : 교육을 실시한 담당강사의 이름과 소속을 기입



기술인력이 외부 강의를 진행한 경우 교육 수료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이 컨설팅 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이수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교육이수 시간은 내부교육 또는 외부교육 관계 없나요?



내부 또는 외부교육 관계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교육인 경우 수료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내부교육은 연간 교육계획서 및 결재기안문, 교육교재, 참석확인증 등 기업의 교육체계 및 이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증빙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정되나요?



고시 제11조 컨설팅 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 중심의 교육이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인정 불가합니다.



신규 기술인력에 대해 입사 이전의 교육 이수 시간도 인정되나요?



교육지원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입사 이후의 교육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 가능하며, 교육 수료 기간은 심사 대상 기간인 최근 2년(지정심사) 또는 최근 1년(사후관리)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불인정 대표사례(예시) >

- 본 고시에 따른 정보보호 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관련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교양 및 소양 교육 등
(예 :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보보안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행사 등)
- 내부교육 증빙자료에서 정보보호 컨설팅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관련 교육 내용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예 : 교육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교육교재 등 증빙 누락)
- 교육이수 증빙자료에서 교육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불명확 또는 교육 기간만 확인되고 이수시간 누락 등의 경우
- 내부교육 실시에 따라 작성한 참석확인서에 참석자 서명(또는 참석자 참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적)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분야 교육과 무관한 경우 등
(예 : 핀테크 기술의 이해, 블록체인이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붙임 1]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붙임 1]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 | | | 5점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0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0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0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시 작성하는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기준은 [붙임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는 제3의 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의 주요 변경사항에 따른 신고 절차

1. 개요
2.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3. 신규 기술인력 등재
4. 기술인력 말소
5. 기술인력 등급변경
6. 납입 자본금 변경
7.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변경



V

기업의 주요 변경사항에 따른 신고 절차



1. 개요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규칙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동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을 통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 및 명칭, 소재지 변경 발생 시 지정서가 재발급 되며, 재발급 처리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된다.
 - 절차 : 변경신고(30일 이내) → 신고 접수 및 보완 → 심사(필요시) → 결과 안내
 - 신고·접수 장소 : k-consulting@kisa.or.kr

관련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2.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
 4. 납입 자본금
 5.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2.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 신고 공문 1부 | - |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 |
|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 | 대표자·임원 명단(고시 별지 제3호서식) |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한함 |
| | 신고 공문 1부 | - |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 |
| | 보안대책 자체점검표 1부(필요시) | 필요시 취약점분석실 현장실사 가능 |

📖 | 참고

🔍 임원(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 변경 신고 공문 작성 예시

수신 : 한국인터넷진흥원(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목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대표자/임원/명칭/소재지) 변경 신고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A사 (대표자/임원/법인의 명칭/소재지)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대표자 | 홍길동 | 000 | |
| 임원 | 홍길동 | 000 | |
| 법인의 명칭 | 주식회사 빛나라 | 주식회사 000 | |
| 소재지 | 000 | 000 | |
| 소재지 (취약점분석실) | 000 | 000 | |

붙임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임원명단 1부

3. 신규 기술인력 등재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비고 |
|------------------|---------------------------|--------------------------------|---|
| 신규 기술 인력 | 신고 공문 1부 | | - |
| | 기술인력 보유현황(고시 별지 제2호서식) 1부 | | 기존 내용에 신규 기술인력 정보를 추가 작성 |
| | 인 력 별 제 출 | 경력 및 실적증명서(고시 별지 제6호서식)(날인) 1부 | 현 직장 경력 및 실적사항만 작성 ※ 과거 직장 관련 내용 작성 불가 |
| | | 재직증명서(현 직장) 1부 | 최근 1개월 이내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1부 | 최근 1개월 이내 |
| | 출 |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일체 | |
| | | 경력증명서(과거 직장)(날인) 일체 | 관련 수행직무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
| | 관련 자격증 사본 일체 | | - |
| 기술인력 등급 및 경력 산정표 | | 엑셀파일 형식 그대로 제출 | |

📖 | 참고

🔍 기술인력 등재 신고 공문 작성 예시

수신 : 한국인터넷진흥원(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목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인력 변경 신고

-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A사 기술인력이 신규 등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분 | 0000년00월00일 | 변경내역 | | 0000년00월00일 |
|---------|-------------|------|---|-------------|
| | | 증 | 감 | |
| 특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고급 인력 | XX명 | X명 | - | XX명 |
| 중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초급 인력 | XX명 | X명 | - | XX명 |
| 기술인력 총원 | XX명 | X명 | - | XX명 |

※ 자사 “정보보호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자체 수행하였음

붙임 : 신규인력 명단

[붙임] 신규인력 명단

| No | 이름 | 생년월일 | 입사일 | 인력구분 | 신고일자 | 비고 |
|----|-----|------------|------------|------|------------|-----|
| 1 | 홍길동 | 1900-00-00 | 2023-00-00 | 고급 | 2023-00-00 | 신규 |
| 2 | 김철수 | 1900-00-00 | 2023-00-00 | 초급 | 2023-00-00 | 신규 |
| 3 | ... | ... | ... | ... | ... | ... |

〈 신고 공문 내 변경 내역 관련 작성 〉

- **날짜1** 사후관리 서류 제출일 또는 최근 마지막 기술인력 변경 신고일
- **날짜2** 신고 공문 발송일

※ 날짜2에 기재 된 등급별 인력 수는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에서의 기술인력 총수(현재)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 구분 | 날짜1 0000년00월00일 | 변경내역 | | 날짜2 0000년00월00일 |
|---------|--------------------|------|---|--------------------|
| | | 증 | 감 | |
| 특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고급 인력 | XX명 | X명 | - | XX명 |
| 중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초급 인력 | XX명 | X명 | - | XX명 |
| 기술인력 총원 | XX명 | X명 | - | XX명 |

참고

기술인력 신규 등재 신고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예시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 | | | |
|--|-----|------------|--------------------------------|------------|-----|-----------------------|---------------------------------|
| ※ 최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신청)일부터 기술인력 신고 순으로 연속기록(퇴직자포함) | | | | | | | |
|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A사 / 홍길동 | | | | |
| 기술인력 총수(현재) | | | 초급(X)명, 중급(X)명, 고급(X)명, 특급(X)명 | | | | |
|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입사일 | 신고일 | 퇴사일 | 인력구분 (초급/중급/고급/특급) | 비고 |
| X | ... | ... | ... | ... | ... | ... | |
| X+1 | 홍길동 | 1900-00-00 | 2020-00-00 | 2020-00-00 | - | 고급 | 신규입사 |
| X+2 | 김철수 | 1900-00-00 | 2020-00-00 | 2020-00-00 | - | 초급 | 직무변경 (2020-00-00) 에 따른 등재 |
| 비고 | | | | | | | |
| 1. 「인력구분」란에는 당해 기술인력이 충족하는 규칙 별표1 각호의 번호를 기재한다(이 경우 규칙 별표1 각 란을 초급보유, 초급미보유, 고급보유, 고급미보유, 고급예외 등으로 구분하고 "초급보유1", "고급예외가목" 등으로 기재한다). | | | | | | | |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기술인력 신고 순으로 연속 기록하며, 신규 기술인력 정보는 최근 마지막 기술인력 변경 신고 서식에 추가 작성함
 - 기술인력 총수(현재) : 신고 공문 본문 내 표 [날짜2] 인력과 동일하게 작성
 - 입사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자격 취득일
 - 신고일 : 기술인력에 대한 변경 신고일 기입
 - 퇴사일 : 작성 불필요
 - 인력구분 :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 기입(등급별 번호 생략 가능)
 - 비고 : 신규 입사, 직무 변경에 따른 등재 신고 등 특이사항 작성

기술인력 신규 등재 신고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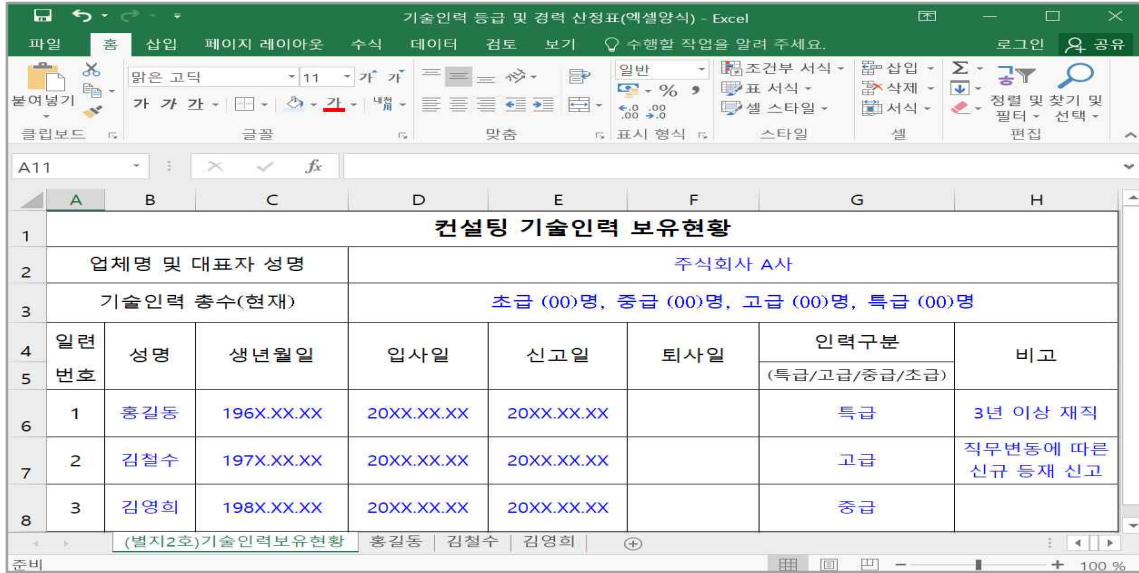
|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 | | | |
|---|-----------|------------|----------|-------------------|---------------|
| ※ 이 서식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심사에 활용됨 | | | | | |
| 인적 사항 | 성 명(한 자) | 홍길동(洪吉童) | | 생년월일 | 1998-01-01 |
| | 주 소 | 홍길동 거주지 주소 | | | |
| 경력 사항 | 근 무 부 서 | 근 무 기 간 | 직 위(직 급) | 담 당 업 무(구체적으로 기재) | |
| | 취약점분석팀 | 2020.X월~ | 과장 | 웹 및 서버 취약점 분석 업무 | |
| <p>당사 재직 시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202X년 XX월 XX일</p> <p>증명기관 A사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p> | | | | | |
| 실적 사항 | 컨설팅 프로젝트명 | 수행 기간 | 대상기관명 | 담당자(전화번호) | 비 고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인적 및 경력, 실적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며 과거 직장에 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기술인력 등급 및 경력 산정표(엑셀파일) 작성 예시

〈 기술인력 등급 및 경력 산정표(엑셀파일) 시트별 작성 〉

- **시트1**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따른 추가되는 신규 기술인력에 대한 정보만 작성



| 컨설팅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 | | | |
|---------------|-----|------------|--|------------|-----|---------------|----------------------|
|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주식회사 A사 | | | | |
| 기술인력 총수(현재) | | | 초급 (00)명, 중급 (00)명, 고급 (00)명, 특급 (00)명 | | | | |
|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신고일 | 퇴사일 | 인력구분 | 비고 |
| | |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 1 | 홍길동 | 196X.XX.XX | 20XX.XX.XX | 20XX.XX.XX | | 특급 | 3년 이상 재직 |
| 2 | 김철수 | 197X.XX.XX | 20XX.XX.XX | 20XX.XX.XX | | 고급 | 직무변동에 따른 신규 등재 신고 |
| 3 | 김영희 | 198X.XX.XX | 20XX.XX.XX | 20XX.XX.XX | | 중급 | |

- **시트2~** 기술인력의 성과와 동일한 이름의 시트를 추가하여 신고 기술인력 수 만큼 작성함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인력 기술경력계산표(2024. 00. 00. 기준) | | | | | | | | | | |
|--|----------------------|------------|------------|------------|-------------|------------|---------------------|----------|-------------|------------|
| [데이터 입력] | 기업명 | A사 | 과학기술인번호 | | | | | | | |
| 직접선택/입력 | 성명 | 홍길동 | 유관학과(유/무) | 유관학과 | 전자관련 | 정보통신관련 | 정보처리관련 | 기타(직함입력) | 재직기간(연직장) | |
| 직접선택/입력 | 최종학위 | 학사 | 학과명 | 정보보안학 | | | | 정보보안 | 3년이상 | |
| 제출서류확인 | 학위제출서류 | 제출 | 최종학위취득일자 | 2020-02-19 | 학사취득일자 | 2020-02-19 | 전문학사취득일자 | | | |
| 직접선택/입력 | 유관자격 | 없음 | 유관자격종류 | 없음 | 직접입력(기타자격명) | | 정보보안관련 자격 보유(선택) | 정보보안기사 | 취득일자(자격-필수) | 2020-01-31 |
| | 자격취득일자 | | | | 해킹대회입상경력 | 없음 | 자격유효기간(필수) | 유효기간내 | 만료일자(자격-필수) | |
| 미입력 | | 근무경력 | 0년 11개월 | 2년 9개월 | 0년 0개월 | 0년 0개월 | 0년 0개월 | 0년 0개월 | 0년 0개월 | 0년 0개월 |
| 직접입력 | 회사명 | A사 | B사 | | | | | | | |
| 제출서류확인 | 재직(경력)증명서 | 제출 | 제출 | | | | | | | |
| 제출서류확인 | 재직증명서유(필수) |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 | | | | | | |
| 직접선택 | 구분 | 정보보호유관 | 정보보호유관 | | | | | | | |
| 제출서류확인 | 재직증명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술 | 수행업무(구체기술) | 기술컨설팅 | 기술컨설팅 | | | | | | |
| 직접입력 | yy/mm/dd | 입사일 | 2023-01-07 | 2020-03-01 | | | | | | |
| 직접입력 | yy/mm/dd | 퇴사일 | 2024-01-01 | 2022-12-31 | | | | | | |
| 검토사항 입력 | 직접입력 | 비고(직업기술) | | | | | | | | |

※ [참고] 기술인력 입사·퇴사일 작성 방법

| 구분 | | 작성 방법 |
|-----|--------|------------------------|
| 퇴사일 | 입사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자격취득일 작성 |
| | 과거 근무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자격상실일 작성 |
| | 현재 근무지 | 변경 신고일(공문 발송일) 작성 |

4. 기술인력 말소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말소기술 인력 | 신고 공문 1부 | - |
| | 기술인력 보유현황(고시 별지 제2호서식) 1부 | - |

📖 | 참고

🔍 기술인력 말소 신고 공문 작성 예시

수신 : 한국인터넷진흥원(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목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인력 변경 신고

-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A사 기술인력이 말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구분 | 0000년00월00일 | 변경내역 | | 0000년00월00일 |
|---------|-------------|------|----|-------------|
| | | 증 | 감 | |
| 특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고급 인력 | XX명 | - | X명 | XX명 |
| 중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초급 인력 | XX명 | - | X명 | XX명 |
| 기술인력 총원 | XX명 | - | X명 | XX명 |

※ 자사 “정보보호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자체 수행하였음

붙임 : 말소인력 명단

[붙임] 말소인력 명단

| No | 이름 | 생년월일 | 입사일 | 인력구분 | 신고일자 | 비고 |
|----|-----|------------|------------|------|------------|-----|
| 1 | 김영희 | 1900-00-00 | 2023-00-00 | 고급 | 2023-00-00 | 말소 |
| 2 | 김영수 | 2000-00-00 | 2023-00-00 | 초급 | 2023-00-00 | 말소 |
| 3 | ... | ... | ... | ... | ... | ... |

〈 신고 공문 내 변경 내역 관련 작성 〉

- **날짜1** 사후관리 서류 제출일 또는 최근 마지막 기술인력 변경 신고일
- **날짜2** 신고 공문 발송일

※ 날짜2에 기재 된 등급별 인력 수는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에서의 기술인력 총수(현재)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 구분 | 날짜1 0000년00월00일 | 변경내역 | | 날짜2 0000년00월00일 |
|---------|--------------------|------|----|--------------------|
| | | 증 | 감 | |
| 특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고급 인력 | XX명 | - | X명 | XX명 |
| 중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초급 인력 | XX명 | - | X명 | XX명 |
| 기술인력 총원 | XX명 | - | X명 | XX명 |

참고

기술인력 말소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예시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 | | | |
|--|-----|------------|--------------------------------|------------|------------|-----------------------|---------------------------------|
| ※ 최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신청)일부터 기술인력 신고 순으로 연속기록(퇴직자포함) | | | | | | | |
|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A사 / 홍길동 | | | | |
| 기술인력 총수(현재) | | | 초급(X)명, 중급(X)명, 고급(X)명, 특급(X)명 | | | | |
|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입사일 | 신고일 | 퇴사일 | 인력구분 (초급/중급/고급/특급) | 비고 |
| X-2 | 김영희 | 1900-00-00 | 201X-00-00 | 2020-00-00 | 2020-00-00 | 고급 | 퇴직에 따른 말소 |
| X-1 | 김영수 | 2000-00-00 | 201X-00-00 | 2020-00-00 | 2020-00-00 | 초급 | 직무 변경(2020-00- 00)에 따른 말소 |
| 비고 | | | | | | | |
| 1. 「인력구분」란에는 당해 기술인력이 충족하는 규칙 별표1 각호의 번호를 기재한다(이 경우 규칙 별표1 각 란을 초급보유, 초급미보유, 고급보유, 고급미보유, 고급예외 등으로 구분하고 "초급보유1", "고급예외가목" 등으로 기재한다). | | | | | | | |

- 최초 지정(신청)일부터 기술인력 신고 순으로 연속 기록하며, 신규 기술인력 정보는 최근 마지막 기술인력 변경 신고 서식에 추가 작성함

- 기술인력 총수(현재) : 신고 공문 본문 內 표 [날짜2] 인력과 동일하게 작성
- 입사일 ~ 신고일, 인력구분 : 마지막 변경 신고 내역이므로 새로 작성 불필요
- 퇴사일 : 해당 인력의 퇴사 등 말소 사유에 따른 일자 기입
- 비고 : 퇴사, 직무 변경에 따른 말소 신고 등 특이사항 작성

5. 기술인력 등급변경(학위·자격증 추가 취득에 따른 사유)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비고 |
|----------------|---------------------------|---------------------------|---|
| 신규 기술 인력 | 신고 공문 1부 | | - |
| | 기술인력 보유현황(고시 별지 제2호서식) 1부 | | - |
| | 인력별 제출 | 재직증명서(현 직장) 1부 | 최근 1개월 이내 |
| | | 추가 취득한 학위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 최근 1개월 이내(학위증명서) |
| | 기술인력 등급 및 경력 산정표 | | 엑셀파일 형식 그대로 제출, 작성 방법은 신규 등재 신고와 동일함 |

※ 단, 지정 기업에서의 근무연한에 따라 변동되는 기술인력 등급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기술인력 현황을 관리함

📖 참고

🔍 기술인력 등급변경 신고 공문 작성 예시

수신 : 한국인터넷진흥원(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목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기술인력 변경 신고

-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A사 (학위 or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술인력 등급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분 | 0000년00월00일 | 변경내역 | | 0000년00월00일 |
|---------|-------------|------|---|-------------|
| | | 증 | 감 | |
| 특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고급 인력 | XX명 | X명 | - | XX명 |
| 중급 인력 | XX명 | X명 | - | XX명 |
| 초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기술인력 총원 | XX명 | - | - | XX명 |

붙임 : 기술인력 등급변동 현황

[붙임] 기술인력 등급변동 현황

| No | 이름 | 생년월일 | 입사일 | 인력구분 | 신고일자 | 비고 |
|----|-----|------------|------------|-------|------------|----|
| 1 | 김민수 | 1900-00-00 | 201X-00-00 | 고급보유1 | 2020-00-00 | 변경 |
| 2 | 이서연 | 1900-00-00 | 201X-00-00 | 중급보유1 | 2020-00-00 | 변경 |

〈 신고 공문 내 변경 내역 관련 작성 〉

- **날짜1** 사후관리 서류 제출일 또는 최근 마지막 기술인력 변경 신고일
- **날짜2** 신고 공문 발송일

※ 날짜2에 기재 된 등급별 인력 수는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에서의 기술인력 총수(현재)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 구분 | 날짜1 0000년00월00일 | 변경내역 | | 날짜2 0000년00월00일 |
|---------|--------------------|------|---|--------------------|
| | | 증 | 감 | |
| 특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고급 인력 | XX명 | X명 | - | XX명 |
| 중급 인력 | XX명 | X명 | - | XX명 |
| 초급 인력 | XX명 | - | - | XX명 |
| 기술인력 총원 | XX명 | - | - | XX명 |

참고

기술인력 등급 변경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예시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 | | | |
|--|-----|------------|--------------------------------|------------|-----|-----------------------|----|
| ※ 최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신청)일부터 기술인력 신고 순으로 연속기록(퇴직자포함) | | | | | | | |
|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A사 / 홍길동 | | | | |
| 기술인력 총수(현재) | | | 초급(X)명, 중급(X)명, 고급(X)명, 특급(X)명 | | | | |
| 일련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입사일 | 신고일 | 퇴사일 | 인력구분 (초급/중급/고급/특급) | 비고 |
| X-2 | 김민수 | 1900-00-00 | 201X-00-00 | 2020-00-00 | | 고급보유1 | 변경 |
| X-1 | 이서연 | 1900-00-00 | 201X-00-00 | 2020-00-00 | | 중급보유1 | 변경 |
| 비고 | | | | | | | |
| 1. 「인력구분」란에는 당해 기술인력이 충족하는 규칙 별표1 각호의 번호를 기재한다(이 경우 규칙 별표1 각 란을 초급보유, 초급미보유, 고급보유, 고급미보유, 고급예외 등으로 구분하고 "초급보유1", "고급예외가목" 등으로 기재한다). | | | | | | | |

6. 납입 자본금 변경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납입 자본금 변경 | 신고 공문 1부 | - |
|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 |

참고

납입 자본금 변경 신고 공문 작성 예시

수신 : 한국인터넷진흥원(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목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납입 자본금 변경 신고

-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A사의 납입 자본금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납입 자본금 | 000 | 000 | |

붙임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끝.

7.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변경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관리규정 변경 | 신고 공문 1부 |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개정 비교표 1부 | 개정 전/후 비교표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개정본 1부 | - |

참고

관리 규정 변경 신고 공문 작성 예시

수신 : 한국인터넷진흥원(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목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관리 규정 변경 신고

-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A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개정사유 : ~법률 개정에 따른 보안관리규정 개정(또는 자사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등)
 - 나. 보안관리규정 개정 세부내용

| 보안관리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X조 | | |
| ... | ... | ... |

붙임 : 보안관리규정 개정 비교표
보안관리규정 개정본

[붙임] 보안관리규정 개정 비교표

- 보안관리규정 제X조 개정
 -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 제X조 변경

| 보안관리규정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X조 | | |
| ... |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해설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합병 신고 절차

1. 개요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양도·합병 신고



VI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합병 신고 절차



1. 개요

- 규칙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합병)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업무를 양도 또는 합병 할 경우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절차 : 사전신고 → 신고 접수 및 보완 → 심사(필요시) → 결과 안내
 - 신고·접수 장소 : k-consulting@kisa.or.kr

관련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합병)

-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양도·합병 신고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공통서류 | 신고 공문 1부 | -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 동의서(해당시) | 정해진 양식 없음 |
| | 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 지정 신청 서류와 동일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업무 양도 신고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양수신고서 1부 |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간 합병 신고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합병신고서 1부 |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

관련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

-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7.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8.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참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업무 양도·양수 신고 공문 작성 예시

수신 : 한국인터넷진흥원(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목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양도/양수) 신고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업무에 대한 양도·양수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구분 | 양도인 | 양수인 | 비고 |
|-----------------|------------|------------|----|
| 업체명 | A사 | B사 | |
| 대표자명 | 홍길동 | ○○○ | |
| 생년월일 | 1900-00-00 | 1900-00-00 | |
| 법인의 명칭 | 주식회사 빛나라 | 주식회사 ○○○ | |
| 소재지 | ○○○ | ○○○ | |
| 소재지 (취약점분석실) | ○○○ | ○○○ | |
| 전화번호 | ○○○ | ○○○ | |

- 붙임 : 1. 양도·양수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참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간 합병 신고 공문 작성 예시

수신 : 한국인터넷진흥원(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목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합병 신고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A사와 B사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업무를 합병하고자 합니다.

| 구분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 | 합병 후 존속·신설되는 법인 |
|-----------------|-----------------|-----------------|-----------------|
| 업체명 | A사 | B사 | C사 |
| 대표자명 | 홍길동 | ○○○ | ○○○ |
| 생년월일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 법인의 명칭 | 주식회사 빛나라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
| 소재지 | ○○○ | ○○○ | ○○○ |
| 소재지 (취약점분석실)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붙임 : 1. 합병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양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
|------|-----|--|

| | | |
|-----|-----------------|------|
| 양도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 |
|-----|-----------------|------|
| 양수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
|-------------|--|
| 양도·양수 내용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대표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수인에 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

210mm × 297mm[백상지 80g/㎡]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합병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 | 업체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 | 업체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합병사유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WII

자주 하는 질문

1. 실적 관련
2. 교육 관련
3. 기술인력 관련
4. 기타



VII

자주 하는 질문



1. 실적 관련

Q

지정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인정되나요?

A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의 특성상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컨설팅 수행실적은 최근(지정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 기준) 3년 이내 종료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컨설팅 수행실적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Q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에서 정보보안대책 수립이 일부 포함된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컨설팅 수행실적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안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인 사업이어야 인정 가능하므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정보보안 컨설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Q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수행의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본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컨설팅 수행실적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또는 감사 용역 사업은 본 고시에 따른 정보보호 컨설팅을 주된 목적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수행의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본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컨설팅 수행실적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신청업체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Q 홈페이지 구축(또는 운영) 업무 내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의 및 조치 과업이 포함된 용역인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홈페이지 구축 등의 개발사업 내에서 수행되는 보안취약점 진단 등의 수행 실적은 본 고시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로 보기 어려워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보안관제 관련 프로젝트가 주된 사업인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본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정보보호 컨설팅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하므로 보안관제 사업의 수행범위 등을 고려해 본다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웹서비스 보안 진단이 주된 사업인 경우,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본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컨설팅 수행실적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합니다.
웹서비스 보안진단 또는 정보통신 안전 진단 등의 사업은 수행범위에 따라서 기술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실적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청업체는 과업 수행 내용 및 범위, 세부산출내역서 등 실적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취약점 분석·평가 진단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하도급 등),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기업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실적은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되며, 도급인의 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Q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고시 제11조에 따르면 컨설팅 수행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컨설팅 수행실적은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고시 제11조 컨설팅수행실적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업체는 계약서(사본)과 세금계산서 자료를 필수로 제출하되, 해당 자료에서 수행실적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발주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날인) 등의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증빙하여야 합니다.

Q 최근 3년 수행실적과 계약서의 사업기간이 일부만 겹치는 경우 실적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실적이 고시 제11조에 따른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사 대상기간과 겹치는 사업기간 동안 수행한 실적을 일할 계산하여 인정됩니다.

Q 컨설팅 실적이 계약서에는 총 1억원에 진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8천만원만 수령한 것으로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1억원 모두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A 해당 실적이 고시 제11조에 따른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계약금액이 아닌 증빙으로 제출 한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Q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컨설팅 수행실적 인정 기준은 고시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①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하고, ②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으로서, ③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이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닌, 단순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또는 시스템 구축이 사업의 주된 목적물인 경우 이를 정보보호 컨설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제, 장비 납품,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등 부가적인 실적은 컨설팅 수행실적 산정 시 제외 됩니다.

Q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수행하는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인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타 시스템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부가적인 실적은 실적금액 산정 시 제외하므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컨설팅 수행 범위, 비율, 산출내역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Q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A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내 관련 증빙자료, 기술인력별 프로젝트 참여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때, 프로젝트 참여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날인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실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업무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참여인력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 별지 제5호서식 내 정보보호 분야 매출 확인 증적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지정 신청 직전 결산회기 기준 정보보호분야 사업 매출내역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신청 기업 회계담당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계산 내역을 증빙하여야 인정 가능합니다.

2. 교육 관련

Q 기술인력이 외부 강의를 진행한 경우 교육 수료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이 컨설팅 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이수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Q 교육이수 시간은 내부교육 또는 외부교육 관계 없나요?

A 내부 또는 외부교육 관계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교육인 경우 수료증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내부교육은 연간 교육계획서 및 결재기안문, 교육 교재, 참석확인증 등 기업의 교육체계 및 이행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증빙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정되나요?

A 고시 제11조 컨설팅 수행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분야 중심의 교육이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인정 불가합니다.

Q 신규 기술인력에 대해 입사 이전의 교육 이수 시간도 인정되나요?

A 교육지원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입사 이후의 교육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 가능하며, 교육 수료 기간은 심사 대상 기간인 최근 2년(지정심사) 또는 최근 1년(사후관리)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 별지 제8호서식 기술인력 교육관리 카드만 제출하면 교육시간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업무수행능력 심사의 교육지원체계 적합성 평가를 위해 [별지 제8호서식]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와 관련된 자료가 반드시 증빙되어야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 참석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경우,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관련

Q 기술인력의 경력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등급 및 경력을 산정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경력은 1개월 이내 발급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통해 가입 이력이 확인 가능하고, 과거 직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등이 증빙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기술인력의 석사 취득 시점이 기술인력의 경력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A 기술인력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이전의 정보보호 경력은 50%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격 취득 시점 전후를 판단하여 자체점검 후 경력 산정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별지 제6호서식 경력 및 실적증명서에 기술인력이 수행한 모든 실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 기술인력이 최근 3년 동안 재직 중인 기업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컨설팅 수행실적에 대해서 제출 가능하며,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신청 기업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후관리 기업의 경우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실적에 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Q 기업의 모든 기술인력을 등재해야 하나요? 지정기준인 10명만 등재해도 되나요?

A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인력 10명 이상 요건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신청업체에서 기술인력 제출 대상을 판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기술인력 자격기준에서 관련 자격(기사/산업기사)의 종목은 무엇인가요?

A 규칙 [별표 1] 비고 1호 가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2]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미제출된 실적에 대해서도 컨설팅 수행실적 2회 이상 기술인력 비율에 인정되나요?

A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 내 경험부문의 “최근 3년간 컨설팅 수행실적” 중 심사를 통해 인정 받은 실적을 대상으로 인정 여부를 평가합니다.

4. 기타

Q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은 언제 가능하고, 어디로 접수하나요?

A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누리집을 통해 게시되는 상·하반기 지정 신청 접수 공고 확인 후 정해진 접수 기간 내 신청해야하며 지정신청 제출서류 일체는 전자우편(k-consulting@kisa.or.kr)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Q

지정 신청에서부터 지정서 발급까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

신청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의 소요기간은 평균 4개월입니다.

Q

현장실사는 어떤 내용을 심사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현장실사 시 업무수행능력평가 내 비계량 심사 항목인 컨설팅 방법론 발표 평가를 실시하며, 설비 요건 및 정보보호 관리규정 준수여부 등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 심사 내용 및 준비자료는 본 해설서 63페이지에서 안내 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분야 보안대책 자체점검표” 각 항목별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지정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의 대표자 및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 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 홈페이지와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KISA 대표 홈페이지(<https://www.kisa.or.kr>)
 - ※ 경로 : KISA홈페이지>사업소개>정보보호산업본부>정보보호산업 관련 제도>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 홈페이지(<https://www.ksecurity.or.kr>)
 - ※ 경로 :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정보보호관련제도>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Q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에서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지정 된 이후에도 최초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심사에 통과된 경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Q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발주 시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을 적용하나요?

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정보보호산업법」 제 23조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정보 보호산업법」에서는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SW사업자가 아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지보수, 구매 등의 사업과 통합 발주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발주기관에서 해당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VI

부록

1. 관련 법령



VIII

부록



1. 관련 법령

[부록 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부록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부록 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부록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록 바]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870호, 2022. 6. 1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5, 64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제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12. 21.>
-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12. 21., 2018. 2. 21., 2020. 6. 9.>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4의3.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2. 10.>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

보호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권고의 이행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⑦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8. 2. 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8., 2007. 12. 21., 2009. 5. 22., 2013. 3. 23., 2015. 6. 22., 2019. 12. 10.>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에 한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10조(보호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①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를 통지함으로써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14조(복구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 본부장을 임명한다.
- ④대책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제4항에 따라 협력과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⑥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 ② 삭제 <2015. 12. 22.>
 - ③ 삭제 <2015. 12. 22.>
 - ④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 ⑤ 삭제 <2015. 12. 22.>

제5장 삭제 <2009. 5. 22.>

- 제17조 삭제 <2009. 5. 22.>
- 제18조 삭제 <2009. 5. 22.>
- 제19조 삭제 <2009. 5. 22.>
- 제20조 삭제 <2009. 5. 22.>
- 제21조 삭제 <2009. 5. 22.>
- 제22조 삭제 <2009. 5. 22.>
- 제23조 삭제 <2009. 5. 22.>

제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제24조(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국제협력) ①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

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19. 12. 10., 2020. 6. 9.>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2. 제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3. 제13조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4. 제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조(벌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2022. 6. 10.>

1.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5. 12. 22.>
3. 삭제 <2009. 5. 22.>
4. 삭제 <2009. 5. 22.>
5. 삭제 <2009. 5.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6. 10.>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2.,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 ④ 삭제 <2017. 3. 14.>
- ⑤ 삭제 <2017. 3. 14.>
- ⑥ 삭제 <2017. 3. 14.>

부칙 <제18870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펙)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8,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08. 6. 1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2020. 6. 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 2. 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 <2015. 6. 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1호, 2023. 4. 1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6452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3. 그 밖에 정보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지정일부터 매 1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휴업·폐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할 때에는 휴업·폐업하려는 날 또는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제8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남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⑧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장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자료를 특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제4항에 따른 양도·합병, 제5항에 따른 휴업 등의 신고, 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9항에 따른 기록 및 자료의 반환, 폐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6. 8., 2023. 4. 18.>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부칙 <제19351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88호, 2023. 10. 1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6452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3788호, 2023. 10. 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 | 300 | 600 | 1,000 |
| 나.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2호 | 300 | 600 | 1,000 |
| 다. 법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3호 | 300 | 600 | 1,000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6호, 2023. 10.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 6452

제8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고급 또는 특급 기술인력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보유할 것
 -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 나.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 다. 업무 관련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을 것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
 - 가. 업무 수행 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안대책
 - 나.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라.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

제9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0. 19.>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7.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8.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이하 "지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할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신청인의 전문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를 한 결과 지정 신청이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2.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3.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

4. 납입 자본금

5.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제1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지정 이후에도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일 부터 매 1년마다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적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합병) 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삭제 <2019. 3. 22.>
2. 삭제 <2019. 3. 22.>
3. 삭제 <2019. 3. 22.>
4. 삭제 <2019. 3. 22.>
5. 제15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6년 1월 1일

부칙 <제116호, 2023. 10. 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1호 관련)

[별표 2]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국문, 영문)

[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양수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합병신고서

[별표 1]

〈개정 2017. 7. 26〉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8조제1호 관련)

| 구분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
| 초급 | 1. 학사 이상의 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는 사람 |
| 중급 | 1. 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회가 인정하는 자 |
| | 초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
| 고급 |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회가 인정하는 자 |
| | 중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
| 특급 | 1.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대회에 입상한 실적 등을 이유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술심의회가 인정하는 자 |
| | 고급 자격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사람
-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이란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격증 수와 관계 없이 1년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된다.
- 정보통신 관련 경력 2년은 정보보호 관련 경력 1년으로 인정된다.
-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를 준용한다.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경력 인정 여부는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회에서 판단한다.

[별표 2]

〈개정 2017. 7. 26.〉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 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업체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1차 | 2차 | 3차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 제6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법 제23조 제6항제2호 | 지정 취소 | | |
| 3. 법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3조 제6항제3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 4.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3조 제6항제4호 | 지정 취소 | | |
| 5.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남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 | 법 제23조 제6항제5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2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별지 제9호서식]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개월 |
| 신청인 | 업체명 | 설립 연월일 |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 소재지 | 팩스번호 | |
| | 자기자본 |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 |
|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수행실적 | 외 건(총 백만원) | |
| | 직원 수 | 총 명, 그 중 기술인력의 수 ()명, 고급 기술인력의 수 ()명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8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해당 인력이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제2호의 기준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합니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제8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표 제8조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관리규정 | 수수료 없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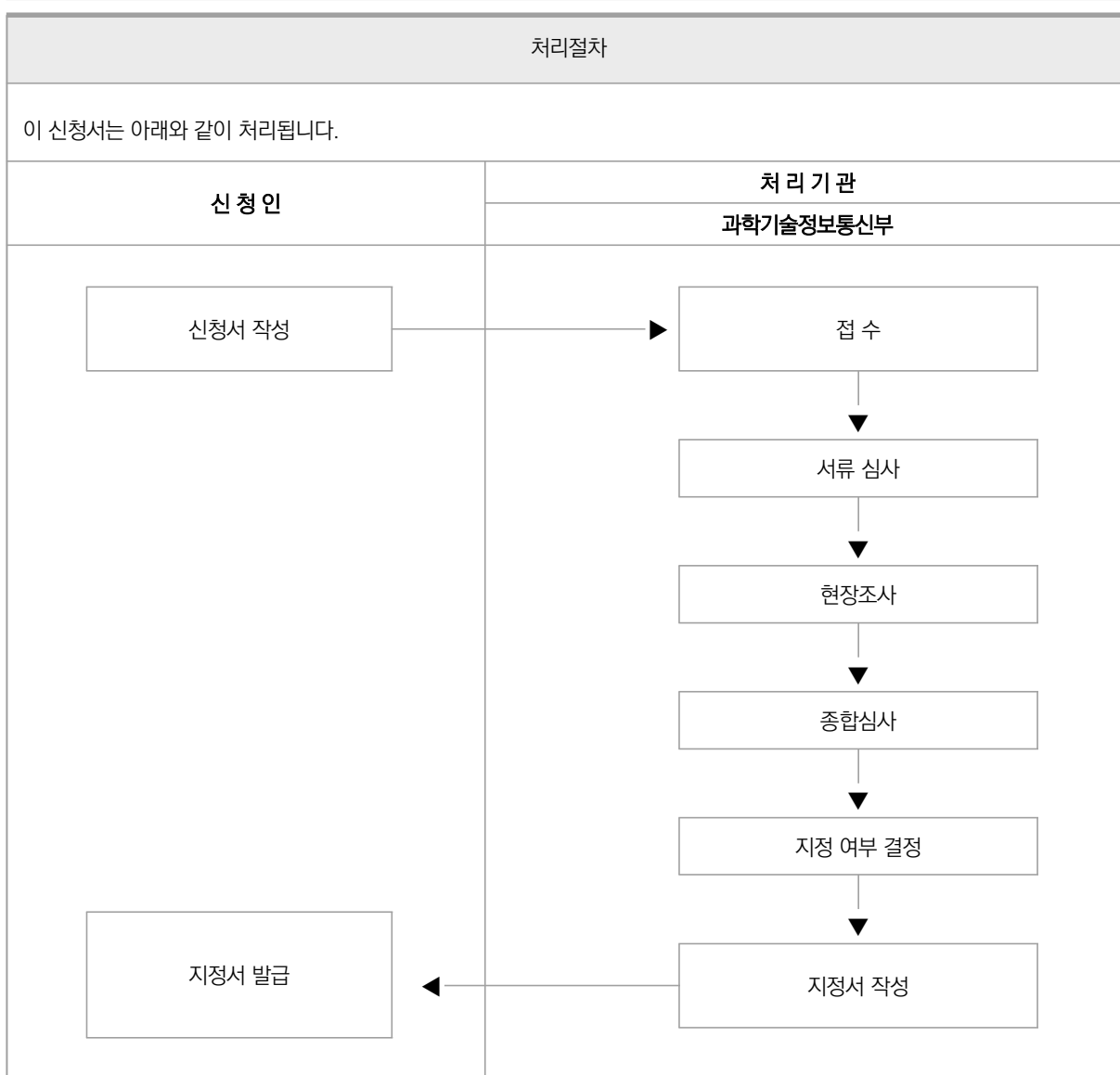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 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국문, 영문)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26.)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국문)

제 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50g/m²)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영문)

Registry No.

CERTIFICATE
of Designation as a Information
Security Service Provider
for Information Infrastructure

Name of Service Provider:

Name of Representative:

Address:

This is Certificate that the above mentioned Service Provider is designated as a Information Security Service Provid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23 (1) of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Promotion Act and Article 12, Clause 1 of its Enforcement Rule.

Minister

Minister of Science and ICT
Republic of Korea

[별지 제11호서식]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양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
| 양도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양수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양도·양수 내용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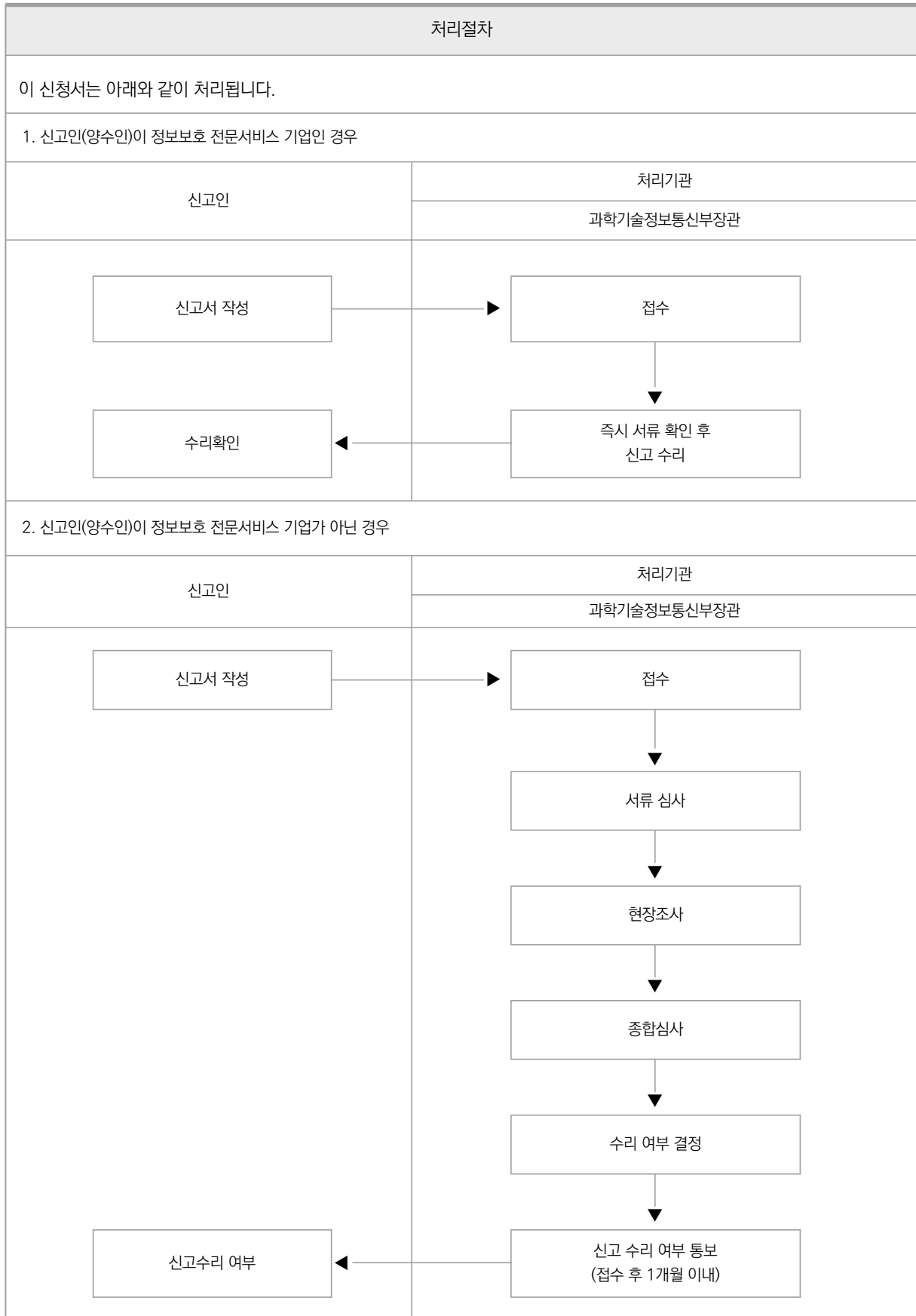
신고인(양수인)대표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7. 26.>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합병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 | 업체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 | 업체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합병사유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 - 7호)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시행 2017.8.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6424

1.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의 범위

- 가. 전자관련 학과(전공)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
- 나. 통신관련 학과(전공)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 다.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 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 인정한다. 단, (4)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 (1)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속직원
 - (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 관련 직렬 등에 보직된 공무원
 - (가)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가)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
 - (3) 「군인사법」과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
 - (4) 「정보통신공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속직원

(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 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50% 인정한다. 단, (1)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술지도, (2)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3) 다음 각목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

(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나) 한국전파진흥협회

(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라) 한국유선방송협회

(4) 다음 각목 기관(업체)의 소속직원 및 군무원. 단, (바) 및 (차)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소속직원에 한하고, (사)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한 소속직원에 한함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나) 「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라)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마)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를 받은 법인

(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자

(아) 「선박법」에 따른 선박

(자) 주한미군

(차)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2급 호텔

(카)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기관

(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기타공공기관

(5) 기타 (1)부터 (4)까지 경력인정을 받은 기관(업체)과 유사한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학위 취득전 경력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한다.

3.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48호, 2014.7.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호나목(5)에 따라 경력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